

# 경찰 기능조정 및 인력재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최종보고서

## 《研究陣》

---

연구위원	: 오 우 식 (한국 제이마크 대표 컨설턴트)
연구원	: 홍 수 중 (한국 제이마크 책임연구원)
연구원	: 윤 자 원 (한국 제이마크 연구원)

---



# 목 차

제1장 조직진단의 절차와 방법 .....	1
제1절 조직진단의 의의 .....	1
제2절 조직진단 방법 .....	4
제2장 환경분석 .....	13
제1절 일반환경분석 .....	13
제2절 기능별 환경분석 .....	25
제3절 이해관계자 분석 .....	48
제4절 범죄양상의 변화 .....	55
제5절 경찰의 역사적 교훈 .....	57
제6절 비전과 전략적 방향 .....	62
제3장 경찰 기능간 우선순위 평가 .....	68
제1절 조사개요 .....	68
제2절 특성요인 및 기능 중요도 분석 결과 .....	72
제4장 적정 수사인력 산출 .....	82
제1절 수사인력 및 사건처리 현황 .....	82
제2절 KDI 방식에 따른 소요인력 분석결과 .....	84
제3절 소요인력 분석 .....	88
제4절 적정 수사인력 산출 .....	94

별첨 .....	98
<별첨 1> 향후 치안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 경찰인력규모에 관한 연구 .....	98
<별첨 2> '04년 지방청별 강력범죄 및 지능범죄의 수사요원 1인당 처리건수 비교 .....	100
<별첨 3> 국관 기능 중요도 비교 조사설문지 .....	101
<별첨 4> 수사업무의 환경변화에 따른 적정업무시간 조사설문지 .....	104

### < 표 차 례 >

<표 1> SWOT 매트릭스 분석 .....	6
<표 2> 선행연구결과에 도출된 시사점 .....	6
<표 3> 국가별 고령화사회 진입 시점 .....	16
<표 4> 112신고 유형별 현황 .....	25
<표 5> 112신고 시간대별 신고건수 현황 .....	25
<표 6> 경비업체·경비원 현황 .....	26
<표 7> 경비업체 규모('04.12.31.현재) .....	26
<표 8> 소년범죄자 수 .....	27
<표 9> 소년범죄자 재범률 .....	28
<표 10> 성폭력사범 발생 현황 .....	28
<표 11> 가정폭력사범 발생 및 조치 현황 .....	29
<표 12> 수사단서 추이 변화 .....	34
<표 13> 사이버범죄 통계 .....	35

<표 14>	활동분야별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04년)	37
<표 15>	범죄유형별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04년)	37
<표 16>	조직폭력배 연령별 검거 현황('04년)	38
<표 17>	연도별 교통사고 감소추이	38
<표 18>	전년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39
<표 19>	선진외국에 비해 높은 차 對 사람 사망자 비율	39
<표 20>	국가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비율	40
<표 21>	노인(65세이상) 사망자 비율 증가	40
<표 22>	역대 정권 대비 폭력시위 비율	41
<표 23>	최근 4년간 폭력시위 비율	42
<표 24>	전세계 테러발생 빈도 급증	42
<표 25>	언론보도 현황 (※ 2004년 이후로 통계관리 하지 않음)	53
<표 26>	문제보도 대응노력	53
<표 27>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구성원 인식('04.진단·변화관리 프로젝트 워크샵 결과)	53
<표 28>	한국경찰의 강점·기회·위기(SWOT)분석	59
<표 29>	기관별 분석에 사용된 설문응답	68
<표 30>	유효한 응답자 특성	69
<표 31>	'03·'04년 수사경찰 정·현원 현황	82
<표 32>	「202 통계」에 따른 '03·'04년 전체 발생범죄의 수사단서별 현황	83
<표 33>	KDI 산정 사건 1件당 처리소요시간	84
<표 34>	KDI 산출 1인당 연간 적정 처리건수	84
<표 35>	「CIMS 입력 사건수 ÷ KDI의 1인당 연간 적정처리건수」로 적정 수사인력 산출	85
<표 36>	연도별 CIMS 입력자료 기준 1인당 처리건수 비교	86
<표 37>	연도별 202통계 기준 1인당 처리건수 재산출	88

<표 38>	「202통계 상 발생건수 ÷ KDI의 1인당 연간 적정처리건수」로 적정 수사 인력산출 .....	89
<표 39>	사건 1건 처리 시 필요한 9개 업무수행 항목 선정 .....	90
<표 40>	응답 현황 (전국 강·폭력팀 749명) .....	90
<표 41>	설문조사 분석결과(평균) .....	91
<표 42>	응답 현황 .....	92
<표 43>	설문조사 분석결과(평균) .....	92
<표 44>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내·외근 별 사건 1건 처리 시 평균소요 시간·	93
<표 45>	「202통계 상 발생건수 JMAC의 1인당 연간 적정처리건수」로 적정 수사인력 산출 .....	94

## < 그림 차례 >

<그림-1>	조직진단 매뉴얼과 이번 조직진단 범위 대비 .....	2
<그림-2>	기능진단 절차 .....	8
<그림-3>	기능 재설계 흐름도 .....	10
<그림-4>	인력진단 절차 .....	11
<그림 5>	연도별 탈북자 국내 유입 현황 .....	45
<그림 6>	외사치안수요와 외사경찰 인력 추이 .....	47

## 제1장 조직진단의 절차와 방법

### 제1절 조직진단의 의의

#### 1) 조직진단의 개념

- ① 조직진단이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조치”를 가리킴
- ② 조직활동의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

#### 2) 그동안의 조직진단결과

##### (1) 진단경과

- ① '91.3.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실시
- ② '04.12. 행정자치부 주관 서울대 행정대학원, 일본능률협회, 삼성경제연구소 용역 실시

##### (2) 진단결과

- ①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조직진단 결과는 비교적 정밀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나, 진단결과를 조직혁신에 반영하지 못한 점 있음
- ② 행정자치부 주관 조직진단 결과는 기능조정·인력재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석결과 도출 미흡

### 3) 조직진단의 범위

① 조직진단은 목적에 따라 진단 범위 및 대상이 달라지는 바, 최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설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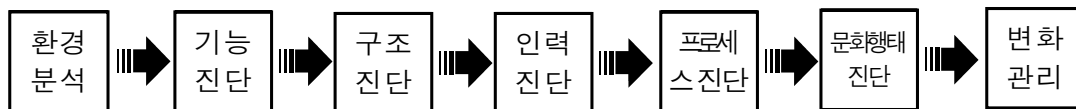
② 매뉴얼의 조직진단은 조직의 ‘기능’·‘구조’·‘인력’·‘프로세스’·‘문화행태’를 진단하고 ‘변화관리 방안’까지 도출해내는 것으로 조직의 모든 부분을 점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나,

⇒ 본 조직진단은“기능조정 및 인력재배치”목적에 따라 환경분석과 국관 기능의 효율성은 분석을 고려하여 자원(기능, 인력)투입의 우선순위와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기능과 인력의 진단을 중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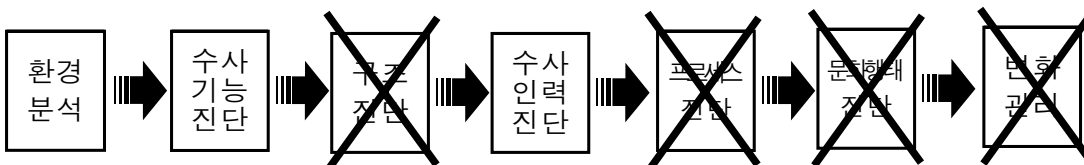
※ 15만명의 전국 조직인 경찰을 본래 의미대로 정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경우 약 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돼야 하므로 현실 여건을 감안,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

<그림-1> 조직진단 매뉴얼과 이번 조직진단 범위 대비

<매뉴얼 상의 일반적인 조직진단>



<우리 팀의 조직진단>



※ 각 단계는 개별 모듈로 구성, 분절되어도 진단 수행에 지장 없음

#### 4) 진단수준의 결정

##### (1) 필요성

- ①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세부기능별 적정 인력을 산출, 정원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 ② 진단대상 단위별 적정한 진단 수준을 결정 후 그에 맞게 실제 진단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
  - 대표성 있는 지방청과 경찰서를 선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 강구

##### (2) 대상 단위별 진단 수준

###### ① 총괄

- 경찰청 국·관 단위 기능을 기준으로 경찰청·지방청·경찰서 기능효율성 평가 결과를 종합
- 비효율 수사기능조정·인력감축 및 잉여인력의 보강 기준 마련

###### ② 경찰청

- 업무별로 기능효율성 평가를 실시
- 수사기능간 업무 우선순위 평가 및 적정 소요인력 산출

###### ③ 지방청·경찰서

- 기능효율성 평가
- 경찰청 기능조정에 준하여 기능조정·인력재배치의 원칙적 기준, 기능별 관서간 업무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인력 도출

※ 각 기능내 구체적 정원 조정은 원칙적 기준 및 조정된 계수에 맞추어 국·관에서 자체 수행

## 제2절 조직진단 방법

### 1) 환경분석

#### (1) 목적 및 절차

- 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조직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미션과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 ② 조직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설정
- ③ 진단단계 및 절차



#### (2) 외부환경분석

- ① 외부환경을 크게 일반환경·치안환경·이해관계자 등 3가지 차원으로 정의
  - 치안환경 분석과 이해관계자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치안환경 내에 일반환경을 상당부분 포함
- ② 각종 연구보고서·정보자료의 활용(관련 연구기관의 정기간행물 등), 핵심그룹 인터뷰 실시

③ 일반환경

- 치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중장기적 또는 이차적으로 경찰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 정부정책 · 경제동향 · 인구동향 · 사회적변화 · 기술변화 등

④ 치안환경

- 치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로서, 단기적 · 전략적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 주요 범죄율, 주요 교통사고 추이, 주요 집회 · 시위, 국제적 범죄동향 등

⑤ 이해관계자

- 경찰조직 외부의 주요 당사자인 정부 · 주요부처 · 국민 등을 의미
- 청와대 · 검찰 · 국정원 등 주요 기관 및 학계 · 언론 · 시민단체 등

(2) 환경변화의 시사점 도출

- 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로부터 향후 조직의 미션과 전략적 방향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내용이나 키워드를 도출
- ② 분석된 변화내용을 조직의 전략 · 방침의 변화와 연계시켜 의미부여
- ③ 활용도구
  - 시사점 도출을 위해 work-shop, 핵심그룹 인터뷰 실시

(3) 전략적 방향도출

- ① 환경변화로부터 오는 기회 · 위협요인을 인식하고, 조직의 강점 · 약점을 분석하고

이들의 결합을 통해 조직의 전략적 대안을 수립

- 강점을 이용해 기회를 포착하거나 위협을 극복(공격적 전략)
- 약점을 극복하면서 기회를 살리거나 위협을 회피(수비적 전략)

② 분석방법 : SWOT모형

- 기회·위협요인 그리고 강·약점요인을 매트릭스화시켜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조직내부의 강·약점을 통한 전략적 방향 도출

<표 1> SWOT 매트릭스 분석

구 분	강 점	약 점
기 회	I. 강점과 기회를 이용한 시너지 창출전략	II. 기회를 이용해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위 협	III. 강점을 이용해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	IV.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전략

<표 2> 선행연구결과에 도출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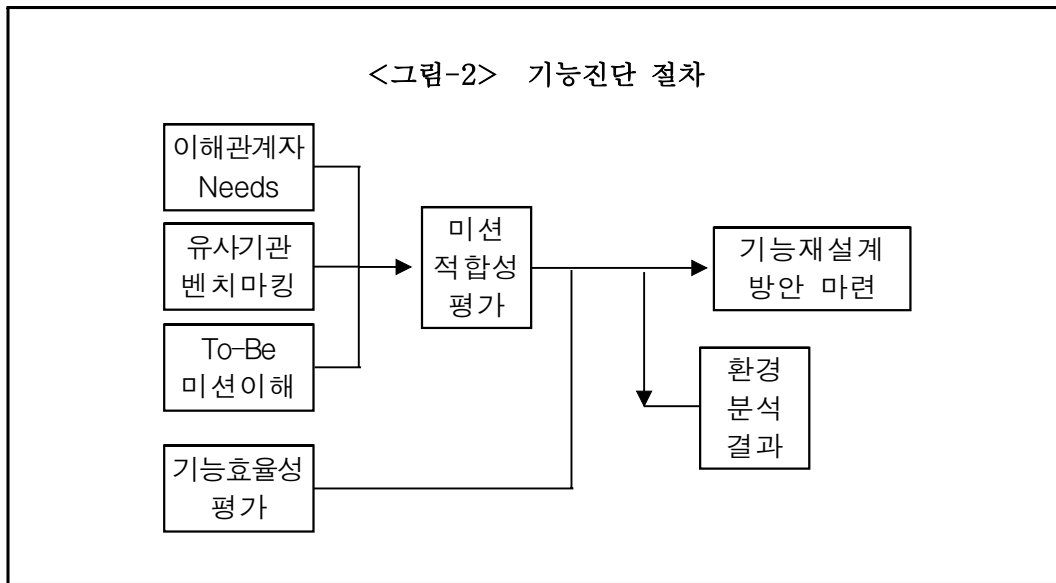
구 분	주요요인	전략적 시사점
기회 요인	기초질서위반 지속감소	기초질서에 관련되어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적인 예방활동의 지속적 강화 필요
	청소년범죄 감소	강력범은 증가, IT발달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개방성 확대,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 예방·선도활동에 주력 바람직
	민간경비업 발달	방법에 대한 민간과 국가의 역할 재정립 필요
	자동차 지속증가 및 교통사고 감소	사고에 대한 사전적 조치강화 등을 중심으로 방향 설정
	남북교류의 증가	보안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재검토 필요

구분	주요요인	전략적 시사점
위협 요인	112신고 지속증가	112신고접수 및 지구대 편성의 효과성 지속적 강화 필요
	풍속영업소 조정	풍속위반 유형에 따른 차별적 대응방식이 필요
	범죄의 지속증가	수사의 효과성 강화방안 모색 필요
	도시의 높은 범죄비중	수사인력 배분기준의 재검토, 인력운용의 탄력성 검토, 지역간 공조강화 등이 요구됨
	경제범죄 증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전문성 강화 필요
	사이버범죄 급증	고도의 전문인력 유치 및 책임·업무 명확화 필요
	탈북자 대량 증가	탈북자 관리방식의 재검토 필요
	테러위험의 증가	테러 예방활동에 대한 지속적 강화 필요
	외국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 및 강력화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외국인 범죄증가	탈기능적 협력체제, 조직계통간 협력체제 강화 필요

## 1) 기능진단

### (1) 목적 및 절차

- 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체계를 미션달성에 부합되고 효율적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단하고 조정·재설계
- ② 선행 환경분석 결과 도출된 전략과제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Needs 분석·유사기관 벤치마킹·To-Be 미션 이해를 통해 각 기능의 미션적합성을 평가한 후 기능효율성 평가 결과와 결합, 기능 폐지·유지·신설·강화·통합 등 설계



### (1) 이해관계자 Needs 분석

- ① 이해관계자가 특정 기능에 대하여 새롭게 희망하거나 요구하는 Needs를 체계적으로 파악, 기능재설계에 활용
- ② 환경분석 단계에서 수행된 분석결과 토대로 미진한 사항만 보완

### (2) 유사기관 벤치마킹

- ① 해외 유사기관(경찰·특수수사기관)의 담당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기능조정 및 기능합리화에 대한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정리

### (3) To-Be 미션 이해

- ① 'To-Be 미션'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한 정책 로드맵』에서 이미 설정된 미션 원용

- ② 기능재설계 시사점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한 정책 로드맵」 9~10쪽 제시 60개 실천과제에서 도출

#### (4) 미션 적합성 평가

- ① 현재 수행하는 기능이 이해관계자 Needs, 유사기관 벤치마킹, To-Be미션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평가하는 단계
- ② 바람직한 변화가 요구되는 방향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

※ 적합성 평가시 A(높음), B(보통), C(낮음)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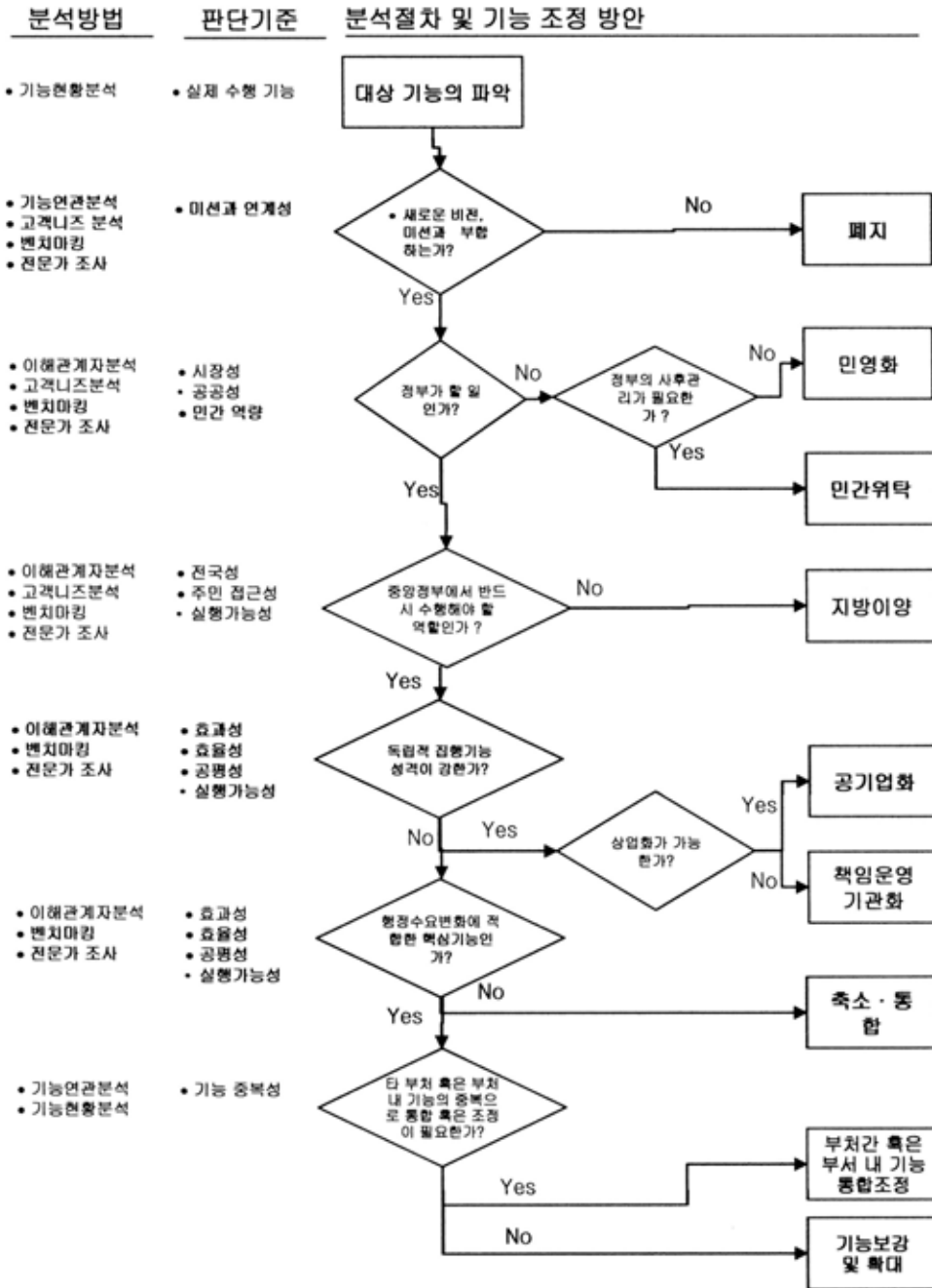
#### (5) 기능효율성 평가

- ① 조직의 사무분장규칙을 기초로 「大→中→小」 기능 順으로 분류, 실제 현업에서 수행되는 단위업무로 보다 구체·세분화
- ② 현지 실사등을 통해 관서별 기능효율성 평가표 작성
- ③ 관서별 기능효율성 평가표를 기초로 경찰청·지방청·경찰서(등급 구분)별 표준화된 평가표 작성
- ④ 표준 기능효율성 평가표에서 평균 “효율성 지수” 및 타기능과 중복여부를 종합, 3등급(효율/보통/비효율)으로 효율성 평가

#### (6) 기능재설계

- ① 기존 이해관계자 Needs·벤치마킹·To-Be 미션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미션적합성 및 환경분석 결과 도출된 이슈과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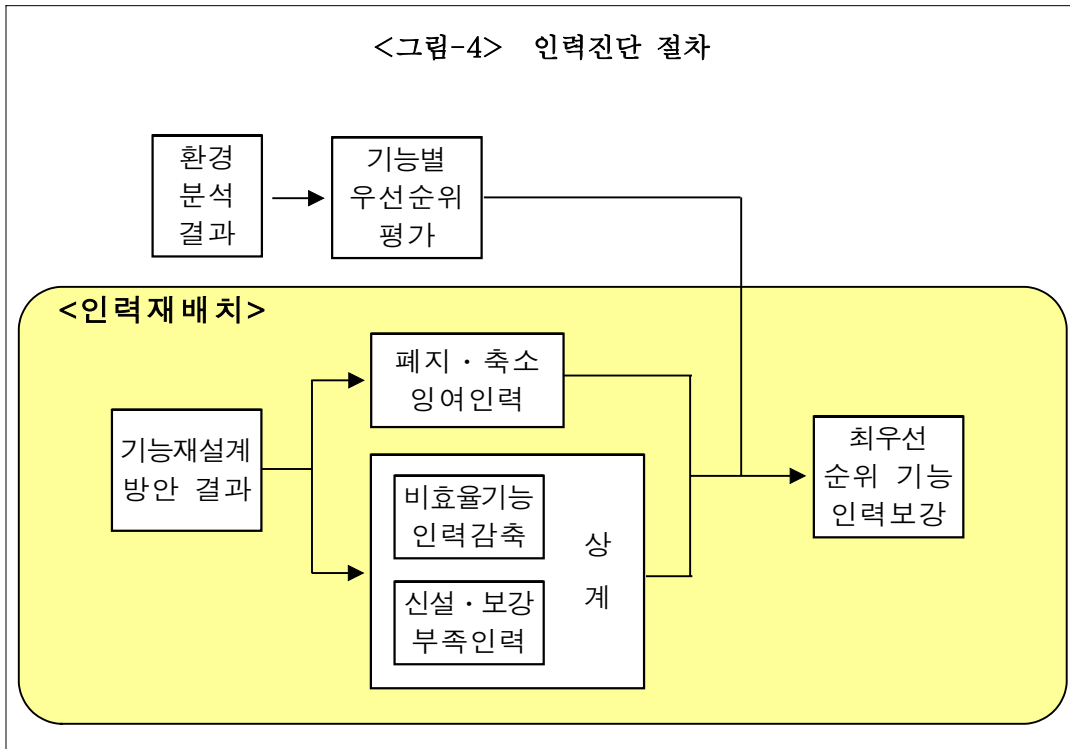
<그림-3> 기능 재설계 흐름도



## 2) 인력진단

### (1) 목적 및 절차

- ① 현재 수행중인 업무에 대한 인력 투입 비중과 기능조정 과정에서 도출된 잉여인력 및 부족인력의 재배치 기준 마련 목적
- ② 환경분석 결과를 기초로 기능별 우선순위 평가 후 기능간 부족인력과 잉여인력의 상계 및 비효율 기능의 인력 감축을 통한 최우선 순위 기능 보강 등 인력 재배치



### (2) 기능별 우선순위 평가

- ① 경찰청의 '과'단위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 부처미션 공헌도·국정목표 적합성·국민만족도

기여도를 종합 평가, 각각 5점(기여도가 큰 수준)부터 1점(기여도가 작은 수준) 부여

- ① 3분야의 총점의 상위 20%는 최우선, 차상위 30%는 우선, 하위 50%는 보통으로 구분

### (3) 인력재배치 방안

- ① 기능효율성 평가 결과 '비효율' 기능에서 신설·보강 필요기능 소요인력만큼 충원

※ 신설·보강 소요인력은 별도 검토

- ② 기능 재설계 방안 결과 폐지·축소 기능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기능별 우선순  
위 평가 결과 최우선 기능에 충원

※ 축소인력은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각 기능별 별도 검토

## 제2장 환경분석

### 제1절 일반환경분석

#### 1. 국내·외의 변화와 전망

##### 1)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정보 사회로의 변화

- ①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시·공간개념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유비쿼터스’시대로 견인
  - 광대역 통신과 컴퓨터의 융합기술이 실생활 전반에 걸쳐 일상화 되는 등 ‘보편적인 지식네트워크’ 형성
  - IT는 유비쿼터스, Organic IT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질적으로 고도화
  - 인터넷을 활용한 유통·정보판매 등 다양한 사업방식이 전개되는 등 디지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
  
- ② 생명공학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향후 30년간 기술혁명을 이끄는 ‘제4의 물결’로 바이오 산업시대 개막
  - 기술간 융합·복잡화 현상에 따라 Bio기술이 전 분야에 파급되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면서 혁명적인 사회변화 촉발
    - ※ 新의약·新농약·유전자변형식품·노화억제산업 등 新산업 등장
  - 배아복제 과정에서 또 다른 배아의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생명모방(Biomimicry)과 생명윤리에 대한 도전으로 윤리논쟁 대두

- ③ 부가가치의 원천이 하드웨어에서 지식·기술 등 소프트웨어로 이전하는 등 지식이 성장을 주도
- 인적자본의 양과 질이 조직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가치창출 수단계에서 지식 활용
  - 국가간 지식에 의한 양극화(Knowledge Divide) 심화로 지식 주도형 선진국과 제조 중심의 기타 국가로 세계경제가 양분
  - 제조업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보편화

## 2)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 재편과 경제적 지역 블록화

- ① 세계경찰을 자임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면서 미국에 대한 반발과 미국 독주에 대한 견제
- 단일 슈퍼파워로서 미국의 정치·군사·외교적 위상이 지속되고,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영향력이 확장
  - 중국·러시아 등 準슈퍼파워가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의 독주를 부분적으로 견제
  - 중동 및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역내 영향력 행사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
- ② 민주주의의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종교·문화·가치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이 심화
-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진전되는 등 민주주의의 글로벌화가 가속
  - 국가 정체성이 약화되고 종교 등 超국가 정체성이 전면으로 부상
- ※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이슬람의 원리주의 성향 강화 등

- 기존의 테러가 초국적이고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을 통해 충격과 공포를 극대화하는 ‘메가 테러리즘’으로 변모

※ 뉴욕의 911테러, 마드리드 열차 테러, 런던의 707테러 등

### ③ BRICs 국가의 경제적 약진 및 지역경제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

-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는 빠른 경제발전 속도와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세계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부상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EU나 ASEAN등 각종 지역 경제협력 체제의 등장이 하나의 경향
- 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활성화되면서 新遊牧民(Neo Nomads)의 대두 및 조직·국가 차원에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 전개

## 3) 북핵문제에 따른 동북아 열강의 자국이익 추구

- ①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 중국과 일본의 대립양상의 뚜렷
  - 대결의 주요원인은 냉정시대와 같이 이데올로기나 팽창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장악과 무역문제
  - 대결의 원인이 과거의 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는 훨씬 변화무쌍
- ② 아시아 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의 팽창정책과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전개
  -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역할증대는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
  - 일본의 우경화 현상은 아시아 제국과의 갈등 소지

## ③ 북핵문제 미해결에 따른 국가적 리스크 부담과 탈북자의 지속 증가

-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지속발전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 모색
- 북한에도 예외없는 개방화의 물결과 북한의 고질적 식량난으로 인해 탈북자의 유입이 지속화

## ④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은 계속

-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독자적인 안보태세의 공고화
-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분단 등의 냉전시대 유산이 그대로 존재
-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구조가 주요 특징

## 4) 사회의 구조적 변화 가속

- ①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실버時代’가 도래

&lt;표 3&gt; 국가별 고령화사회 진입 시점

구 분	프랑스	미국	이태리	영국	독일	일본	한국
고령화사회	1864	1942	1927	1929	1932	1970	2000
고령사회	1979	2013	1988	1976	1972	1994	2018
초고령사회	2019	2030	2008	2020	2010	2006	2024

자료 : 통계청(2005),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 ② 전통적 가족개념의 해체에 따른 불안정 심화

- 개인주의의 발달, 여성·노인의 경제적 자립도 증가, 이혼율 급증, 편모편부·소년소녀가장 등 불안정 가정이 증가
- 혈연공동체의 마지막 형태인 “핵가족”의 개념이 붕괴되고, “자유로운 개인”에 기초한 독신자·동거·계약결혼이 확산되는 등 애정결합 형태가 다양화되어 새로운 가족개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 ③ 노년·여성층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Grey &amp; Pink Collar)

-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수차례 직업 및 경력을 바꾸는 2모작 생활양식이 증가 추세
- 노년층이 프리랜서, 초소형 사업자, 자영업, 지식기반 근로자, 독립 전문가 등으로 변신하는 ‘E-retirement’ 현상이 대두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원천으로 여성인력 활용이 증대
  - ※ 여성의 경제기여도는 세계 GDP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0%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추산(OECD)

## ④ 가치관의 변화와 참여의 폭발에 따른 “cybercracy”의 시도

- 명령과 통제의주의 중앙집권적·위계적 권위가 몰락하고, 설득과 영향력에 입각한 새로운 권위 등장
- 시민사회의 참여요구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되어 “cybercracy”구현

## 5) 자연의 보복

## ① 기상이변과 환경안보의 중요성 부각(Environmental Security)

- 지구 전체의 기후안정성이 약해지면서 기상이변이 속출
  - ※ 200말 기온이 1.4~5.8℃ 상승하고, 해수면이 0.85m 높아지는 등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

-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탄소흡수지(아마존 등 열대우림지대)가 감소
- 물 부족, 오염 폐기물 방출에 따른 재난 등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환경위기가 안보문제로 비화
- ※ UN은 2050년 20억 이상의 인구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며 국가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 경고

## ② 녹색협력 및 갈등(Green Cooperation & Conflict)

- 환경위기 대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에 따른 국가 차원의 협력 강화
-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는 환경라운드 출범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대립·갈등이 첨예화

## ③ 에너지 자원 경쟁

-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각국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선진국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노력 가속
- 중동지역 등 주요 원유생산 지역의 정정불안이 구체화되는 경우 석유공급의 차질 예상

## II. 우리사회 현재의 모습

### 1) 실정법보다는 때법·정서법이 우선시

#### ①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집단이기주의가 팽배

- 정치와 행정·경제·교육·언론 등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연고와 집단 중심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폐쇄적 신뢰” 사회 구조

- 이해관계의 갈등을 대화·협상보다는 물리적인 힘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팽배
  - 파벌이나 연고에 따른 협동은 잘되면서 공공적인 상부상조의 생활태도는 상당히 미숙
- ② 50여년간 구조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갈등과 모순이 내재화
- 근대화 이후 혈연 중심적 공동체의식이 약화되었으나, 공공윤리적 협동의식은 미정착
- ③ 근대화와 관료적 권위주의하에 발생된 한국적 병리현상
- 일제잔재의 미청산문제는 해방 이후 한국 시민사회 형성에 있어 시민들간의 불신, 공적규준에 대한 불신의 토대로 연결
  - 압축성장 과정에서 권력과 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만연

## 2) 예외가 인정되는 이중적인 가치체계를 유지

- ① 국민의식 속에 민족애와 지역주의·능력주의와 평등의식이 혼재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중적 모습을 표출
- ② 나와 타인에게 다른 가치체계를 적용하는 이중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많은 예외가 존재
- 법적용에 있어 많은 예외가 인정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이 여전히 미흡
  - 근대화 이후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
  - 성공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부족

### 3) 다수의 공공선보다 자신의 이익과 정당성이 우선시

- ①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이 정착되지 못해 일반국민의 신뢰 저하
  -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관행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사회풍토의 개선이 담보
  - 자유민주제도의 역사가 60년 이상 되었지만 시민의식은 아직 미성숙

### 4) 계층·세대·지역 등 내부의 다양한 차이로 인한 갈등이 표출

- ① 역사적으로 매우 장기간 단일민족을 유지해왔으나, 사회의 분화에 따라 집단간, 개인간 의식의 격차가 발생
  - 이러한 차이는 가치관·이데올로기를 분화시킴으로써, 때로는 사회갈등의 잠재요인으로 작용하여 폭력적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도 발생
  - ※ 오산시 택지개발지구 철거민 농성('05. 6)은 살상무기까지 동원하는 등 폭력시위의 일상화와 불감증의 심각성을 경고
- ② 누리꾼들의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여 특정인을 매도하는 등 건전한 누리꾼 문화의 형성이 필요

### 5) 배타적 외국인 제도로 이민제도가 미정착

- ① '04년말 현재 42만 명의 외국인이 취업해 있고 결혼하는 사람 100명 가운데 11명이 국제결혼
- ② 한국의 230여개의 성씨 가운데 귀화인이 시조인 경우가 130여개로 절반이 넘고,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귀화 성씨도 존재
  - '93년부터 '99년까지 연간 100여명 안팎에 불과하던 귀화자는 '00년 200명을 넘어섰고, '04년 10월말 현재 7,800명으로 급증

- ③ 국적취득시 출생지주의가 아닌 혈통주의를 고수함으로써 한국인과 결혼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조차 까다로운 귀화조건을 적용
- 납세의 의무 등 국민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5년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하도록 규정
  - ※ 온라인 등록, 현금영수증센터 등록, 신용카드 발급 등에 있어서 제한
- ④ 은행과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외국인등록번호 활용도도 매우 건조
- 정부는 외국인등록번호 인증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상태
- ⑤ 특히 동남아시아계 노동자의 귀화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가 심각
- 일정기간 이상의 연속체류 사실(2년 이상 합법체류), 일정액 이상의 경제적 능력(3,000만원 이상의 재산 보유), 귀화시험 합격 등을 요구
  - 내국인과 구별이 쉬운 제3세계 출신의 귀화자들은 외국인 신분일 때와 별반 차이가 없음
- 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이민제도가 없어 사용만 하고 정착은 허용하지 않는 이주노동자제도를 채택
- 단순노동은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이고, 전문 인력은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

### III. 변화의 필요성

#### 1) 시민의식의 미성숙은 사회적 비효율성을 야기

- 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력 수준에 맞는 선진 시민의식 배양이 필요
-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부문의 경쟁력 개선이 시급
  - ※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사회의 역량은 23위, 거버넌스 24위, 혁신성

16위로 개인·기업·정부에 비해 경쟁력이 열악

※ 압축성장을 통해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상승하였으나, 시민의식은 아직까지 중진국 수준

②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은 정부·기업과 개인의 원활한 경제 및 사회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

- 법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원칙이 훼손되어 뇌물·부패 등 다양한 사회 비용을 초래
- 전체보다 우선하는 각종 이해집단의 이기적 행동은 타 집단에게 피해를 전가

## 2) 신뢰사회 구축은 네트워크 경쟁력의 중요 구성요소

① 신뢰·준법정신·상호존중의 문화, 이해갈등의 원활한 해소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요소

- 신뢰는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 가능하며, 경제적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의 번영에 기여

※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신뢰(Trust)를 사회적 간접자본으로서 자본, 노동, 자연 자원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4번째 요소로 간주

② 철저한 준법정신은 사회적 신뢰와 시민의식의 기초

- 신뢰사회는 정직과 투명성, 그리고 원칙을 존중하는 시민정신과 시장규율로부터 구축
-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는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근간

## 3) 글로벌시대에는 다양성의 조화와 공존이 필수

① 신뢰(Trust)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

- 모든 집단이 비타협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게 되면, 갈등해소 방안의 도출이 곤란

-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와 양보는 갈등을 해소하고,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켜 각 이해집단의 이익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
  - ※ 해결방안의 제시 없이 문제만 제기하는 풍토는 갈등을 더욱 조장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 ② 이해갈등을 대화·협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갈등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현상은 사회불안을 증폭시키고, “원칙은 지켜진다” 인신을 무력화
- ③ 가정·학교·직장·조직 등 집단 내에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시민의식의 기본
  - 가정과 학교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생활의 기본을 학습·훈련하는 것이 중요
- ④ 글로벌시대의 다문화사회에서는 조화와 공존이 필수
  - 새로운 문화·민족·언어·관습이 복합되는 상황에서 긍정적 융화가 이루어지면 시너지를 발휘하고, 부정적일 때는 파국으로 치닫게 됨
  - 다양한 문화 및 집단간의 상생을 도모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파국을 막는 지름길

#### IV.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

##### 1) 원칙이 지켜지고 법의 테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 ① 규칙이 투명하며 일관성이 유지되는 사회
  -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인식을 보편화
- ② 공적신뢰가 회복되어 제기능을 발휘하는 사회
  - 우선적으로 공적신뢰를 회복하여 법치국가의 체계를 확립

③ 자율규제기능의 강화로 사적신뢰와 공적신뢰를 신장

- 공적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능을 확충하여 사적신뢰도 회복
-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

## 2) 이견과 문화 차이가 인정되고 다양성이 시너지를 가져오는 사회

① 내부 이해관계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 집단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물리력이 아닌 협상으로 해결
-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세련된 사회지향

② 국적·시민권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거주 불편을 해소

- 국내거주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국가”의 이미지 제고

## 3) 새로운 선진 시민의식 구현

① 스스로 : 일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보다는 본인에게서 먼저 책임의 원인을 규명하는 성숙한 자세 구현

- 농민과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등의 갈등에서 서로 자기성찰보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근절
-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자세를 지양

② 더불어 : 공공의 선에 부합하는 행동을 실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박애정신의 함양

-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공생한다는 것을 인식

③ 밖으로 : 글로벌화된 세계속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세계의 공동번영의 동참

- 타 국민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다양한 문화의 경험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일체감을 형성

- ④ 미래로 :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사고
- 과거에 얽매어 현실을 적시하지 못하는 것은 실리적인 면에서도 손실
  - 미래지향성을 분명히 하여 사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
- ⑤ 실질로 : 이념논쟁이나 명분 및 체면에 따른 행동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
- 하는 행동양식을 보편화
  - 단기적·개인적인 이익에서 탈피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사고

## 제2절 기능별 환경분석

### 1. 생활안전

#### 1) 112 신고의 지속적 증가

<표 4> 112신고 유형별 현황

시 간	계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4~02	02~04	04~06
건 수	4,763,996	199,166	258,937	265,211	290,186	334,860	371,243	456,253	555,103	675,602	654,685	446,886	255,854
비 율	100	4.18	5.44	5.57	6.09	7.03	7.79	9.58	11.65	14.18	13.74	9.38	5.37

<표 5> 112신고 시간대별 신고건수 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체	2,044,851 (100)	2,594,776 (100)	3,178,190 (100)	3,396,749 (100)	3,522,583 (100)	4,078,925 (100)	4,763,996 (100)
생활민원 (비율)	783,689 (38.3)	950,902 (36.7)	1,047,935 (33.0)	1,222,019 (36.0)	1,304,608 (37.1)	1,579,964 (38.7)	2,018,265 (42.4)
형사범 (비율)	678,173 (33.1)	826,600 (31.8)	966,018 (30.4)	780,224 (23.0)	738,991 (20.9)	809,619 (19.9)	844,044 (17.7)
교통사범 (비율)	298,734 (14.6)	488,603 (18.8)	713,003 (22.4)	789,145 (23.2)	823,008 (23.4)	902,490 (22.1)	938,118 (19.7)
경 범 (비율)	284,255 (13.9)	328,671 (12.7)	451,234 (14.2)	605,361 (17.8)	655,976 (18.6)	786,852 (19.3)	963,569 (20.2)

① 전체 112신고건수는 '02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15.8~16.8%)

⇒ 전체 112신고의 높은 증가율은 지구대 업무가 112신고 처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② 신고유형의 경우 형사범은 꾸준한 감소추세이나 생활민원에 관한 신고는 증가 추세

⇒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112신고 처리를 통해 과거의 권위적인 경찰이미지를 불식하고 친근한 경찰이미지로 개선 가능 시사

③ 20:00~02:00 사이에 신고 집중

⇒ 탄력근무제 도입 등 지구대 근무형태의 변화 필요 시사

2) 민간경비업의 규모·분야 확대

<표 6> 경비업체·경비원 현황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비업체	690	785	975	1,151	1,375	1,707	1,882	1,929	2,051	2,163	2,322
경비원	40,223	44,720	52,489	62,419	52,343	71,481	81,618	97,117	107,963	104,872	105,697

① 경비업체·경비원수 증가 등 민간경비업의 규모는 꾸준한 확대 추세

⇒ 경찰과 경비업 공동 발달을 통한 경쟁적 보완 관계로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필요

<표 7> 경비업체 규모('04.12.31.현재)

구분	계	10인 이하	20인 이하	30인 이하	40인 이하	50인 이하	80인 이하	100인 이하	200인 이하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경비업체	2,322 (100)	1,156 (49.78)	331 (14.25)	188 (8.10)	116 (5.00)	92 (3.96)	159 (6.85)	62 (2.67)	135 (5.81)	30 (1.29)	53 (2.28)

② 경비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49.78%)

⇒ 민간경비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 설정 필요

### 3) 청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

<표 8> 소년범죄자 수

구분 \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형법범	94,310	96,150	84,518	75,511	67,408
살인범	68	54	50	53	24
강도범	3,117	2,619	1,922	1,618	1,840
강간범	567	511	391	317	299
방화범	76	84	91	53	37
절도범	23,898	32,668	25,188	26,345	24,208
폭력범	52,205	54,178	49,410	37,375	31,510
사기범	2,621	3,022	4,644	7,225	7,405
횡령범	676	830	812	685	584
장물범	554	454	300	291	195
기타형법범	1,528	1,730	1,710	1,549	1,306
특별법범	47,209	46,868	46,541	39,699	29,289
소년범 계	141,519	143,018	131,059	115,210	96,697
성인범 계		1,596,541	1,729,628	115,210	1,718,061

① 성인범죄 대비 소년범죄율은 '0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 감소

- 절도·폭력범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추세에도 여전히 전체 소년범의 53%~60% 차지

&lt;표 9&gt; 소년범죄자 재범률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년 범죄자	108,721	123,372	136,323	153,380	151,383	141,523	143,024	131,059	115,210	96,697
재범자	23,716 (21.81)	29,119 (23.60)	36,644 (26.88)	44,518 (29.02)	50,598 (33.42)	51,058 (36.08)	50,588 (35.37)	48,216 (36.79)	41,749 (36.24)	33,814 (34.97)

- ② 재범자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전체 소년범의 1/3 이상으로 여전히 많은 상태  
⇒ 재범률을 낮출 방안 모색 절실

#### 4) 대여성·아동범죄 등 발생 증가

&lt;표 10&gt; 성폭력사범 발생 현황

구 분	계	강간·추행등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2000	23,364	6,855	2,920	606
2001	26,647	6,751	2,750	2,561
2002	26,731	6,119	3,325	2,136
2003	28,902	6,531	3,886	2,077

※ '00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00.7.1.부터 가산한 수치임

- ①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증감 없음

⇒ 대여성·아동범죄는 매년 총범죄 대비 0.13~0.15%에 불과하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 측면에서 지속적 예방 활동 및 피해대책 수립, 수사시 “2차 피해”의 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

## 5) 가정폭력 사건의 지속 증가

&lt;표 11&gt; 가정폭력사범 발생 및 조치 현황

구 분	검 거 건 수	검 거 인 원	조 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구 속	불구속	기 타 (계도등)	건 수	인 원
2000 (지수1) (지수2)	12,983 (100)	14,105 (100) (100)	678 (100) (4.80)	13,380 (100) (94.86)	47 (100) (0.33)	3,813 (100)	4,404 (100) (31.22)
2001 (지수1) (지수2)	14,585 (112.3)	15,557 (110.3) (100)	691 (101.9) (4.44)	14,760 (110.3) (94.88)	106 (225.5) (0.68)	4,559 (119.6)	4,813 (109.3) (30.94)
2002 (지수1) (지수2)	15,151 (116.7)	16,324 (115.7) (100)	586 (86.4) (3.59)	15,127 (113.1) (92.67)	611 (1300.0) (3.74)	3,702 (97.1)	4,083 (92.7) (25.01)
2003 (지수1) (지수2)	16,408 (126.4)	17,770 (126.0) (100)	496 (73.2) (2.79)	16,787 (125.5) (94.47)	487 (1036.2) (2.74)	4,186 (109.8)	4,459 (101.2) (25.09)
2004 (지수1) (지수2)	13,770 (106.1)	15,208 (107.8) (100)	329 (48.5) (2.16)	13,969 (104.4) (91.85)	910 (1936.6) (5.98)	2,587 (67.8)	2,616 (59.4) (17.20)

※ 지수1은 '00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별 증감 추세

※ 지수2는 각 연도별 총 검거인원 대비 처분별 인원 비중

## ① 가정폭력 사건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 지속적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적극 활용 필요

## II. 수사분야

### 1) 사개추위에 의한 형사사범 체계의 전환 논의

#### ① 국민의 사범참여 제도 도입

- 사범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범제도 확립 차원에서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
- 단, 형사재판제도 변화에 대한 충격 완화 차원에서 단계적 실시
  - ※ '05년 관계법안 성안 및 국회 통과, 2007년 1단계 제도시행, 5년간 1단계 제도시행 및 평가, 2012년 완성된 국민사범참여제도 시행
- 중죄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되, 피고인 불원시 제외
  - ※ 중죄사건 : 형법상 사망·강도·강간 사건, 특가법상 뇌물, 약취·유인, 보복범죄, 특경법상 배임수죄 사건 등

#### 《1단계 : 국민사범참여제도의 기본구상》

- ▶ 대 상 : 재판 현실 감안, 전국적으로 약 100~200건 정도 사건
- ▶ 재 판 부 : 직업법관 3인, 일반국민 5~9명으로 구성
- ▶ 심리방식 : 준비절차에서 공판진행계획을 수립, 집중심리 연일 개정을 통하여 「공판중심주의」 구현
- ▶ 참여방식 : 법관 지도하에 일반국민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논의 후 의견을 개진, 유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에 대한 의견도 개진
- ▶ 일반국민 의견의 효력 : 권고적 효력

-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확립

②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 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직접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전제로 한 제도

- 기존의 서면심리 중심의 조서재판에서 탈피,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 구현
- 이를 위해 피고인·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 및 반대신문권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하고,
- 집중심리제 도입과 직접주의, 구두변론주의 원칙 철저 준수

※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증거능력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차등화 등은 추가 논의를 통해 단일안 도출 계획

③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통상처리절차」와 「신속처리절차」로 이원화
- 신속처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처리절차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충실한 심리 도모
- 신속처리절차 신설, 「즉결심판제도」는 폐지하고, 「약식명령제도」는 신속처리절차로 흡수
- 신속처리법정을 상설화하여 공소제기가 있으면 가능한 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심리 종료 원칙
- 송치서류 간이화 및 경찰·검찰의 이중수사 최소화로 국민 불편 감경

④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 현행 형소법은 형법상 직권남용(123조), 불법 체포·감금(124조), 폭행, 가혹행위(125조)의 죄로 대상 한정
- 그 외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

- 향후 대상범죄의 제한 없이 모든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
- 신청납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검찰항고전치주의와 재정신청인의 비용 부담 및 담보제공 제도 채택

#### ⑤ 기타 사개추위 건의문에 포함된 내용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 국선변호제도를 확충, 현 단계에서는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 장기적으로는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전원을 대상
-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대체의무 부과를 포함,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 위헌시비가 있는 현행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에 대해 사후영장에 의한 통제 등 개선 조치 강구
- 피해자 보호는 피고인 인권보장과 조화 원칙하에 신뢰할 수 있는 자의 동석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상황 통지범위 확대
- 생명과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보상 추진

## 2) 수사권 조정논의

### (1) 당위성

#### ①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성숙한 선진 민주사회로 진입

-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건강하게 작동

-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참심·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작업 진행중
- ② 형사사법체계의 관문인 수사구조에 있어서만은 아직도 50여년 전 낙후된 시대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규정되었던 비민주적 독점체제 유지
-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모두 이루어냈으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인권의식도 성숙
  - 경찰도 많이 변화되었고, 국민 여론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지지
- ⇒ 이제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고, 수사권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청

※ 최근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국내 23개 파워조직에 대한 영향력·신뢰도 평가 결과 정부기관 중 경찰이 유일하게 신뢰도·영향력이 모두 높은 선두 그룹에 선정되었으며, 한국경제에서 실시한 국가만족도 평가에서도 치안·방법 분야는 다른 분야를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음

※ 각종 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지지율이 70%를 상회

## (2) 그간의 조정논의 경과

- ①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정책과제로 선정, 警·檢 공동 「수사권조정 협의체」('04.9.15~12.14) 및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04.12.20~'05.5.2)운영 조정 논의하였으나 협의 결렬
- ② '05.6.15 이인기 의원 대표로 의원 18명이 형소법 개정안 공동발의·심의
- 형소법 제195·196조에 경찰 수사주체성 인정, 警·檢 상호협력 관계 명문화
- ⇒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필요 시사

&lt;표 12&gt; 수사단서 추이 변화

구분	계	현행범	고소·고발·진정	피해자·타인신고	기타
2000	1,739,558 (100)	592,059 (34.04)	386,290 (22.21)	585,675 (33.66)	78,166 (4.49)
2001	1,860,687 (100)	657,701 (35.35)	409,833 (22.02)	559,495 (30.07)	124,700 (6.70)
2002	1,833,271 (100)	686,555 (37.45)	411,500 (22.44)	517,853 (28.25)	195,739 (10.68)
2003	1,894,762 (100)	669,779 (35.35)	465,802 (24.58)	539,011 (28.45)	220,170 (11.62)

① '04년 발생한 범죄 중 수사에 착수하게 된 단서는 전체범죄의 55.2%, 형법범의 70.6%가 신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
- 다만, 강간범죄(34.2%)와 폭력범죄(33.0%)와 같은 특정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임
  - ⇒ 경찰의 힘만으로는 미흡하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

② 고소·고발·진정 및 기타 불심검문·첩보 등에 의한 수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신고에 의한 수사는 감소 추세

⇒ 고소·고발 사건 감축 및 수사인력 보강 등 종합적인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 4) 사이버범죄의 급증

&lt;표 13&gt; 사이버범죄 통계

구 분	계	사이버 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소계	사기	불법 복제	불법 (유해) 사이트	명예 훼손	개인 정보 침해	기타
2001	33325 (100)	10674 (32.03)	22651 (67.97)	14172 (42.53)	1474 (4.42)	790 (2.37)	1505 (4.52)	1109 (3.33)	3601 (10.81)
2002	60068 (100)	14159 (23.57)	45909 (76.43)	31109 (51.79)	1889 (3.14)	1115 (1.86)	1971 (3.29)	2496 (4.16)	7329 (1.22)
2003	68445 (100)	14241 (20.81)	54204 (79.19)	37453 (54.72)	664 (0.98)	1821 (2.66)	1823 (2.66)	2863 (4.18)	9580 (14.00)
2004	77099 (100)	15390 (19.96)	61709 (80.04)	40283 (62.52)	1064 (2.08)	2308 (3.00)	1922 (2.50)	3137 (4.06)	12929 (16.77)

① 사이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서 사이버를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양상으로 변화

⇒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고도의 전문성에 의한 첨단기법을 요하는 점을 감안, 전문인력 의 유치 및 기법개발 등 필요

⇒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사건 등 증가에 따른 죄종별 수사팀간 업무범위의 명확한 구분 및 인력확충 필요성 시사

## 5)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범죄의 광역화·기동화

①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광역수사시스템 구축 필요

- 전 세계 네트워크화 등 유비쿼터스 시대 진입 및 과학기술·교통·통신수단 발달에 따라 범죄의 광역화·조직화 추세 가속

- ‘치고 빠지기’식 기동성 범죄, 성격이상자 등에 의한 ‘무동기성’ 범죄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수사대응체제 구축 필요

② 전문성·효율성을 대폭 강화시킨 수사체제로 개편 필요

- 국민이 바라본 경찰의 전문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 여론도 전문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인정

※ 「경찰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민/경찰 여론조사 결과분석 보고서」(04.7 경찰청)

- 최근 수사구조 개혁 및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 논의 등과 관련하여 한 차원 up-grade된 경찰 수사시스템 구축 필요

⇒ 신속한 범죄대응 및 경찰관서간 공조체제 확립의 필요성 시사

## 6) 조직범죄의 확산

① 개방화·세계화 추세에 편승하여 범죄집단이 국경을 넘나들며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 증가

- 범죄조직이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의 출처를 위장하는 이른바 ‘돈세탁 행위(money laundering)’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

② 국내에서는 주로 조직폭력을 중심으로 조직범죄에 관한 논의 진행

- 향락산업과 퇴폐풍조의 확산은 폭력배들에게 좋은 서식처 제공
- 피해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은 조직폭력배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결정적 요인
- 폭력조직의 구성원들과 상부상조 혹은 공존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보호막 구실을 해주는 ‘주변세력’의 존재도 장애물

## ③ 조직폭력배 최근 동향

- 기존 유흥업, 사채업 등 전형적인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재개발 관련 이권개입, 카드할인업, 상가분양 개입 등 활동분야 및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lt;표 14&gt; 활동분야별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04년)

(단위 : 명)

계	유흥업소	채권·채무 사채업	건축 등 공사관련	도박 등 사행행위	서민상대 갈취	인신매매 등 용역	불법선거 관여	경제이권	마약, 밀수
3,203	1,123	142	53	231	1,278	12	64	33	267

- 범죄수법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유흥업소 갈취에서 탈피하여 합법을 가장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기업화·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어 더욱 치밀한 첩보수집 및 철저한 증거수집 요청

&lt;표 15&gt; 범죄유형별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04년)

(단위 : 명)

계	업소업체 운영	갈취폭력	청부폭력	보복세력 다툼	인신매매	마약, 밀수	기타
3,203	232	2,088	99	349	11	39	385

- 조직 규모면에서도 경찰에 노출되기 쉬운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이나 기존 조직의 확장보다는 소규모 신흥조직을 결성하거나 필요시 조직간 연계하여 활동하는 추세
- 구성원들의 연령은 20~30대가 대부분이며 10대도소수이나 포함

※ 세를 불리기 위해 자퇴·가출한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조직폭력배를 미화한 영화·드라마의 영향으로 학교주변 불량배들이 소 영웅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lt;표 16&gt; 조직폭력배 연령별 검거 현황('04년)

(단위 : 명)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203	234	1,583	1,029	319	38

### III. 교통분야

#### 1) 교통사고의 감소

- ① 주요 교통지표인 자동차·도로·인구(운전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2000년 대비 약 24% 감소

&lt;표 17&gt; 연도별 교통사고 감소추이

연도별	교통사고(건)	자동차(대)	도로(km)	인구(천명)	운전자(천명)
2000	290,481	12,059,276	88,775	47,008	18,697
2001	260,579	12,914,115	91,397	47,343	19,884
2002	231,026	13,949,440	96,037	47,640	21,223
2003	240,832	14,586,795	97,253	47,925	22,062
2004	220,755	14,934,092	100,278	48,199	22,735

- ➔ 무인단속장비 확충·교통사고 요인행위 집중 단속·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등 실효적인 교통안전정책 지속 전개 필요

- ② 전년 대비 교통사고 감소로 약 4,005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

※ 직접적인 사회비용 추산(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사망 1인당 3억 6,021만원·부상 1인당 565만원

&lt;표 18&gt; 전년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분 기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04년	220,755	6,563	346,987
'03년	240,832	7,212	376,503
대비(%)	-20,077(8.3)	-649(9.0)	-29,516(7.8)
비용절감(만원)	40,054,169	23,377,629	16,676,540

➡ 교통안전활동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전환 및 교통안전정책을 위한 예산 확충 필요

## 2)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

&lt;표 19&gt; 선진외국에 비해 높은 차 대 사람 사망자 비율

구분 기간	계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량 단독		차대 열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04년	6,563	2,543	38.7%	2,693	41.0%	1,324	20.2%	3	0.05%
'03년	7,212	3,595	49.8%	2,197	30.5%	1,416	19.6%	4	0.05%
대비(%)	-649(9.0%)	-1,052(11.1%)		496(10.5%)		-92(0.6%)		-1(0%)	

- 차 대 사람 사망자 점유율이 38.7%로 전년대비 11.1% 감소했으나, 여전히 보행자 사망비율이 미국 11.2%, 프랑스 11.3% 등에 비해 3배이상 높음

➡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 위해 「보행자 안전대책」 지속 추진 필요

### ◎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사망자 수

- 2004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1명대의 미국 등 선진 외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

※ 최하위국인 헝가리 4.8명, 터어키 3.9명, 그리스 3.7명 보다 낮음.

➡ 교통선진국 수준인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2.0명 이하로 진입 위해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운동」 전개 필요

&lt;표 20&gt; 국가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비율

구분 국가별	인구 (만명)	자동차 (만대)	발생건수 (건)	(명)	사망자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한국 (2004년)	4,808	1,666	220,755	6,563	3.9	13.6
미국 (2002년)	28,836	22,568	1,967,000	42,815	1.9	14.9
일본 (2002년)	12,743	8,097	936,721	9,575	1.2	7.5
독일 (2002년)	8,244	5,330	362,054	6,842	1.3	8.3
프랑스 (2002년)	5,934	3,539	105,470	7,655	2.2	12.9
영국 (2002년)	5,920	3,040	228,535	3,581	1.2	6.1
벨기에 (2002년)	1,033	573	41,715	1,292	2.3	12.5
스페인 (2002년)	4,040	2,506	98,433	5,347	2.1	13.2
터어키 (2001년)	6,861	982	55,160	3,840	3.9	5.6
그리스 (2001년)	1,095	506	16,852	1,654	3.7	17.9
헝가리 (2002년)	1,017	297	19,686	1,429	4.8	14.0
포르투갈 (2002년)	1,030	872	42,219	1,675	1.9	16.3

주) IRTAD자료(OECD기준에 따른 통계수치)

&lt;표 21&gt; 노인(65세이상) 사망자 비율 증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사망자	10,236	8,097	7,222	7,212	6,563
노인 사망자	1,853	1,579	1,596	1,707	1,730
노인 점유율	18.1%	19.5%	22.1%	23.7%	26.4%

- 교통사고 사망자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노인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
- ➔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노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필요

### 3) 「통합 교통관리 정보센터」 설치·운영 예정

- ①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사업 일환으로 경찰청·건교부·정통부 공동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통합 교통관리 정보센터」 설치 추진 중
- 2006. 2월중, 서울·인천·부천·광명 지역 서비스 제공 예정
  - 2010년까지 수도권 전역 서비스 제공 예정
  - 2010년 이후 전국 확대 실시 예정
- ※ 통합 교통관리 정보센터
- 각 지역의 교통관리정보센터를 연결, 권역별 광역 교통정보 및 전국 교통정보의 수집·제공
  - 경찰은 신호제어, 도시권 교통정보 수집·상황관리, 교통위반 단속 등 핵심업무 담당(건교부 : 고속도로·국도 교통정보 수집, 정통부 : 민간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 ➔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량 급증 예상으로 전담 인력 증원 필요

## IV. 경비분야

### 1) 폭력시위의 감소 추세

#### (1) 폭력시위 현황

<표 22> 역대 정권 대비 폭력시위 비율 ※ 통계는 연평균

시 기 별	6공화국 (‘88년~’92년)	문민정부 (‘93년~’97년)	국민의 정부 (‘98년~’02년)	참여정부 (‘03년~’04년)
전체집회	7,592건	6,937건	11,138건	11,587건
폭력시위(비율)	3,507건 (46.2%)	627건 (9.04%)	126건 (1.12%)	112건 (0.97%)
경찰부상자	5,113명	1,461명	438명	685명

&lt;표 23&gt; 최근 4년간 폭력시위 비율

구 분	전체 집회시위	폭력시위(비율)	경찰부상자
2001년	13,083건	215건(1.64%)	673명
2002년	10,165건	118건(1.16%)	287명
2003년	11,837건	134건(1.13%)	749명
2004년	11,338건	91건(0.80%)	621명

◎ 물리력을 동반한 폭력시위는 이미 사회문제가 된 이슈에 관한 집회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고,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 2003년에는 불안 방폐장으로 인해 경찰부상자 증가

➔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노력 지속 전개 및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대처 원칙 철저한 준수 필요

## 2) 대테러 위협 증가

&lt;표 24&gt; 전세계 테러발생 빈도 급증

연도별	계	폭 파	무장 공격	암 살	인질 납치	항공기 납치	기 타
2000	429	223	113	45	32	9	7
2001	466	231	149	41	31	7	7
2002	497	226	216	20	13	3	19
2003	809	357	310	64	17	3	58
2004							

② 우리나라도 자이툰 부대 파병으로 인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 및 사회병리·이해갈등 심화로 인한 방화·독가스 살포 등 테러 위협 가능성 증대

➔ 테러 첩보 수집·테러 진압 등 테러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3) 전의경 감축 전망

①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의경 정원 감축 예상

※ 구체적 감축 규모는 가변적

② 치안력의 핵심축인 전·의경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

-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복무환경으로 전·의경의 불만과 사고요인이 상존하고 체계적인 관리system도 미흡

- 전·의경 자체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구타·가혹행위등 비인간적 악습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전의경 행정보조 부서의 업무 효율화 방안 강구 및 경력의 대량 투입을 통한 '틀어막기'식 경력운용 탈피 필요

## V. 정보분야

### 1) 사회적 갈등의 빈발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① 17대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세대교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새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세대·이해집단간 갈등이 증폭

② 민주·인권을 위한 제도는 고도로 정비되면서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수준은 낮아 공권력 행사를 제약

※ 이기주의적 행태와 더불어, 집단의 위력과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관철하려는 풍조 만연

③ NGO 단체들은 경찰작용의 적법성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

## 2) 시책정보 중요성 증대 및 정보수집의 한계 봉착

- ① 최근 보·혁 갈등 심화 등 사회 각계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에 따라 국가 정책 결정시 객관적 판단자료의 가치 증가
  - ➡ 국정운영의 이정표 역할을 담당할 시책정보의 중요성 증대
- ② 민주화에 따라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인적정보에 주로 의존한 종래 비공식적 첩보 수집의 어려움 증가
  - ➡ 공개정보에 의한 첩보 수집 능력 향상 필요

## 3) 인터넷의 영향력 확대 및 on-off 라인간 경계 희석

- ① ‘오마이 뉴스’ 방문자가 1일 630여만명으로 기존 신문을 압도하는 경향으로 발전
- ② 온라인상의 여론이나 의견개진이 집회·시위형태로 현실화 되는 경향이 확산
  - ※ 탄핵 무효 촛불시위가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발단

## 4) 정보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요구 증가

- ① 17대 총선 결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학생운동권 및 시민단체 출신 다수 당선, 여성의원 비중 증가 등에 따라
  - 노사·노정관계 불안, 급격한 개혁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을 걱정하는 여론이 상당
- ② 각종 갈등상황에 대한 ‘예고·해결’을 경찰력에 의존하려는 경향 등으로 치안부담 가중
  - 특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적법성 시비는 물론 ‘과잉 진압’ 논란 가능성이 증가
  - ⇒ 정책적 고려보다는 엄격한 법적근거와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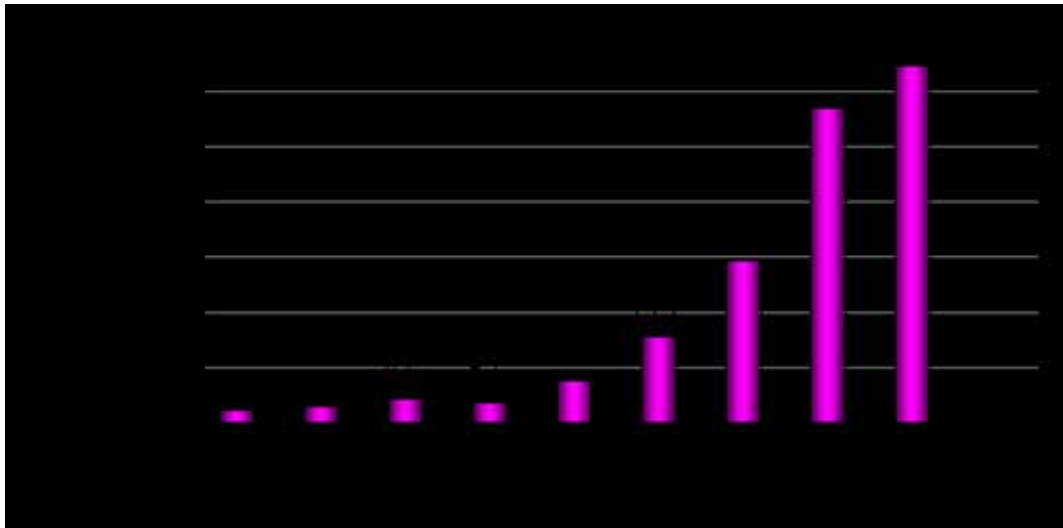
## VI. 보안분야

### 1) 탈북자의 유입 증가

① '99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 급증, 향후에도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탈북자의 보호활동 강화로 조기 정착 기여 및 사회문제 소지 사전 예방

<그림 5> 연도별 탈북자 국내 유입 현황



### 2)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 등 보안 치안수요 급감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는 잠잠해졌지만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

※ '00년 이후 검거 간첩이 2명에 불과할 정도로 보안수요 급감

① 일부 시민단체 등의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관 해체공세

- 경찰 내외의 보안기능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일각의 보안경찰 역할축소, 보안

무용론까지 대두

※ 조직 내에서조차 나오는 비판은 보안 특유의 비밀주의가 자초한 측면

- 과거사 진상규명 및 청산작업의 진행에 맞추어 ‘혁신’ 차원의 보안기능 재조정 등이 절박한 시점

➔ 치안수요에 합당한 수준으로 보안 조직·인력 감축 필요

### 3)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시대 도래

- ① ‘대립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 및 남북 당국자간 대화와 남북교류 활성화
- ② 진보개혁 세력의 제도권 진입 등 정치지형 변화와 민족공조, ‘우리민족 제일주의’ 등 친북풍조의 급격한 확산

## VII. 외사분야

### 1) 산업기밀 해외 유출의 지속적 증가

- 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향상될수록 산업비밀의 해외유출 사례 지속 증가 예상

※ 산업기밀유출 실태(국정원 발표)

- '04년 산업스파이 25건 적발, '03년(6건) 대비 316% 증가
- 유출시 피해예상 추산액 32조원, '03년(13조) 대비 14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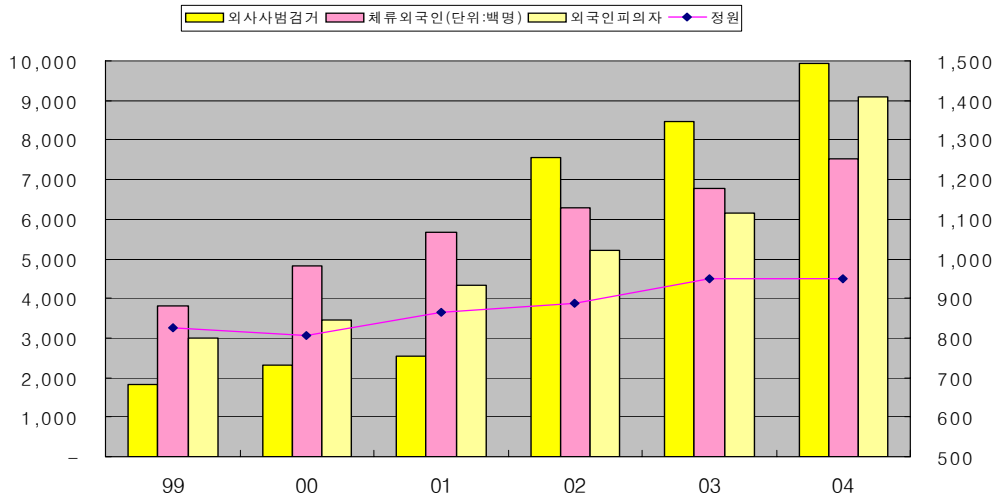
- ② 식자본 시대 도래 등 미래에는 산업기밀 보호가 한 국가의 경제적 운명 좌우 가능성

➔ 산업기밀 보호 및 산업방첩 전담기구 신설 필요

## 2) 외사 치안수요의 증가

- ① '99년 대비 '04년 체류외국인 97.6%, 외국인 피의자검거 202%, 외사사범 검거 440% 증가
- ② 반면, 외사경찰은 14.9% 증가에 불과

&lt;그림 6&gt; 외사치안수요와 외사경찰 인력 추이



➡ 외사치안수요 증가에 맞는 조직·인력 보강 필요

## 제3절 이해관계자 분석

### I. 일반국민

#### 1) 경찰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다소 만족' 수준

① '05년 경찰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100점 만점 기준 66.1점으로 나타나 '다소 만족' 수준으로 분석

※ '05년 주민 만족도 : 상반기 65.4점, 하반기 66.7점

- '04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소 만족'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0.4점 증가
- '03년까지 67점 수준을 유지했던 국민만족도는 '04년에 65점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05년에 66점 수준으로 회복

⇒ 경찰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찰관들의 인식전환과 정책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점차 경찰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② 지구대·수사형사·교통분야 등 기능별 만족수준을 종합한 '요소별 만족도'는 66.4점이며, '체감 만족도'는 65.7점으로 조사

- 기능별 평가에서는 '교통분야 만족도'(67.9점)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수사·형사 분야'(64.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 항목평가 중 '범죄 예방활동' 항목은 모든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으나, '사건·민원·업무처리의 공정성'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특히, 수사·형사분야의 '민원처리 신속·정확성'과 '민원처리 공정성' 항목은 만족수준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

③ '05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경찰 접촉자'의 주민 만족도가 2.2% 상승

※ 상반기 64.2% → 하반기 66.4%

④ 외국과 주민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미국·일본 등 선진경찰 서비스에 비해 앞서 가는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 '05년 국민 만족도 66.1점

※ 미 국 : '04년 ACSI(경찰접촉자 대상) Central city 57점, suburban 63점

※ 일 본 : '03년 시민만족도 학회(경찰 비접촉자 포함)/만족비율 42.5점

※ 영 국 : '02년 Office of Public Reform(경찰접촉자 대상) 79%

⑤ 국내 수사기관과 비교결과, '04년 기준 경찰청(67.6점), 대검찰청(62.5점)으로 조사 되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 경찰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 이미지

① 경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

- 특히 “공정성·인권의식·청렴성”등의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 이에 반해 경찰은 “공정성”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② 경찰에 대한 직접 경험이나 매스컴 등 간접경험 모두 경찰에게 부정적인 이미지 심어주는 것으로 조사

- 특히 경찰이미지 형성에는 경찰의 언행·태도 및 언론보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과 국민의 접점이라는 것이 확인

### 3)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원인 분석

- ① 청렴성 : 경찰관 개인의 태도(34.7%), 경찰내의 관행(21.8%), 부패경찰관에 대한 처벌 보도(10.6%)
- ② 즉응(신속)성 : 경찰인력규모 및 교육 훈련(33.8%), 경찰장비(23.0%), 사회여건의 변화 (10.0%)
- ③ 친절성 : 경찰관의 서비스정신(49.1%), 경찰조직의 문화(18.5%), 단속과 규제 중심의 경찰업무 특성(8.1%)
- ④ 공정성 : 경찰관의 책임의식 및 사명감(47.5%), 지역주민과의 유착관계(17.8%), 보편화된 청탁문화(9.8%)
- ⑤ 전문성 :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41.5%), 경찰행정의 과학화·전문화(35.0%), 학문적 노력(3.6%)
- ⑥ 인권의식 : 경찰관 자신의 태도(36.9%), 국민의 인권의식 성장 등 시대변화(31.3%), 정치적 중립(5.5%)

### 4) 직접접촉자와 비접촉자 만족도 분석

- ① 경찰관 접촉자'(65.4저)에 비해 '접촉해 보지 않은' 주민들의 만족도(66.7저)가 1.3 점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수사·형사 접촉자와 비접촉자간의 만족도 격차(1.5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비접촉자'의 경찰관에 대한 이미지 및 우호적인 태도가 다소 긍정적이라는 것을 반영
- ②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사·형사분야의 평가항목 중 '친절성', '민원처리 신속정확성', '민원처리 공정성'과 같은 직접 대면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5) 분야별 분석

- ① 업무처리의 “공정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된 반면, “친절성”과 “범죄 예방 노력”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조사
  -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항목은 타 항목에 비해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결과는 낮게 나타남
  - 접촉한 국민들은 경찰을 불신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공정 혹은 편파적인 업무처리’(31.4%)를 꼽음
- ② 상당수의 국민(42.2%)은 경찰의 치안서비스 중 과거 대비 향상된 부문이 없다고 답변
- ③ 순찰지구대 체제 개편이후 경찰의 범죄대응 능력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분석
- ④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보호 방안에 대해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견해 제시

## II. 중앙정부

- ① 정부는 끊임없는 경찰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
  -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역동적인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 그 자체가 경찰의 직무가 되어야 합니다.”(’05.3.16 대통령 경찰대학 졸업식 연설중)
- ② 범죄와 사건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역할 강조
  - “무엇보다도 범죄·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략~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04.10.21,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연설중)
- ③ 인권이 존중되고 법질서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선도적 역할 주문

- “인권이 존중되고 법질서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인권과 법질서 수호는 그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찰의 기본 책무입니다.”(’04.10.21,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연설중)
- ④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
  - “우리 경찰은 정권의 손발노릇을 하던 과거의 경찰이 아닙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04.10.21,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연설중)
- ⑤ 깨끗하고 투명한 경찰상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주문
  - “학습과 자기혁신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해질 때 공권력의 권위와 치안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04.10.21,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연설중)
- ⑥ 국민에 대한 봉사성 강조
  -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경찰 스스로도 우수한 수사능력과 고품질의 수사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철저히 준비해야할 것입니다.”(’05.3.16 대통령 경찰대학 졸업식 연설중)

### III. 언론 및 관계기관

#### 1) 언론보도

- ① 언론과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다소 진전된 모습으로 발전
  -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시정노력 등 오보에 대한 대응이 늘어나는 추세
  - ⇒ 보다 수평적이고 적극적으로 언론에의 대응 및 구성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lt;표 25&gt; 언론보도 현황 (※ 2004년 이후로 통계관리 하지 않음)

구분	총계	긍정보도	부정보도	사건·사고		
				소계	검거	발생
2002	3,981	2,126	415	1,440	1,066	374
2003	4,142	1,846	385	1,911	1,186	725
증감(%)	161(4.0)	-280(13.2)	-30(7.2)	471(32.7)	120(11.3)	351(93.6)

&lt;표 26&gt; 문제보도 대응노력

구분	총계	언론중재위 제소			소송
		소계	정정·반론보도	중재 불성립	
2002	10	9	6	2	1
2003	17	13	8	5	4
2004	17	16	14	2	1
증감(%)	0	3(23.1)	6(75)	-3(60)	-3

① 경찰관들은 현재 실재의 경찰과 언론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관은 언론에 대한 지도부의 민감한 반응 때문인 것으로 인식

&lt;표 27&gt;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구성원 인식('04.진단·변화관리 프로젝트 워크샵 결과)

구분	현재 언론과의 관계	미래의 원하는 관계
1차 워크샵	-매스컴이나 각종 영화에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의 왜곡·편향 보도 -언론에 대한 수뇌부의 지나친 민감대응	-국민적 혼란, 조직사기저하 방지위해 대 언론관계 대응 및 관계 정립 필요 -지속적 홍보를 통한 경찰이미지 고양 -지도부의 과민반응 자제
2차 워크샵	-업무특성상 언론에 과도하게 민감 -경찰의 부정적 요소를 집중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불신 증대 -경찰서에 기자실에 있어 사무실을 무단 출입하며 무분별한 취재활동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되, 오보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 -언론보도에 따른 점수제 폐지

## 2) 관계기관 등

- ① 경찰업무의 경계가 불투명하여 타 행정기관의 규제적 법집행 업무가 경찰의 협력에 의존함으로써 경찰에 과도한 비난 집중
  -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경찰 고유의 권한을 벗어난 법집행 업무를 경찰력에 의존하여 손쉽게 달성하려는 타 관계기관의 타성 여전
  - 관계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여론의 비난이 경찰에도 미치게 되는 부정적 영향
- ② 조직외부 행정기관과의 업무영역 중복으로 불필요한 지휘·감독·통제를 받아 독립성 저해
  - 수사에 있어서의 법무부, 정보·보안업무에서의 국가정보원, 경호업무에 있어서의 대통령경호실, 대간첩작전에서의 국방부 등
  - 해당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독자적·주체적 관계설정 및 제도적 구체화 방안 마련 절실
- ③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배분 및 치안사무에 대한 역할한계·협조 구체화 필요
-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노 등 공무원 단체의 영향으로 기관간 비공식적인 협조 곤란 추세
  - 지자체 등 타 행정기관에서의 예산보조 등이 어려운 실정
- 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인한 투명행정 요구 상승

## 제4절 범죄양상의 변화

### 1) 양적 측면

#### ①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

- 최근 10년간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범죄가 87.8% 증가

#### ② 과실범죄(사건·사고·재난)가 빈발하는 상황이 지속

- '94~'03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사망한 인원은 15,915명(부상 1,917,843명)인데 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원은 95,843명(부상 3,663,46명)
- '03년 1년 동안 교통사고로 7,222명이 사망(인구 10만명당 14.8명)하고, 연간 뺑소니사고 발생건수가 2만여 건

#### ③ 생태계 파괴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산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결과('03년)는 국민의 39.0%가 “계속해서 환경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여기고 있음
- 국내 생물 종 수 10만여종 가운데 매년 500종(月42종, 日1.4종)이 멸종되는 것으로 조사

#### ④ 마약거래·도박·성매매 등이 계속해서 확산추세

- 연간 성매매 거래량이 1억7천만 건에 달하고, 성매매로 인한 연간 매출액은 24조원이며, 성매매 전업(full-time job) 여성인구가 약 33만명으로 추정(형사정책연구원)

#### ⑤ 외국인범죄 및 국제성범죄의 꾸준한 증가추세

- '04.5월 현재 약 68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중이고, 이 중 13만8천 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로 집계
- 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01년 6,788명, '02년 8,046명, '03년 9,338명으로 매년 급

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⑥ 사이버범죄의 급증추세가 계속

- 국내의 인터넷 이용인구가 3천만명을 초과하여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 다음으로 세계 4위 수준
-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익명성, 자율성, 개방성, 공간초월성 등의 특징을 이용한 각종의 범죄가 기승

## 2) 질적 측면

- ① 연쇄살인, 암매장, 시신은닉, 장기매매 등의 범죄를 통해 범죄의 흉포화·잔인화 현상
- ② 붕괴·추락·화재·침몰 등과 같은 대형사건·사고(과실범죄)가 꼬리를 물고 발생
- ③ 증권시장조작, 돈세탁, 첨단기술 밀반출 등 전문지식을 이용한 범죄의 확산현상을 통해 범죄의 지능화, 전문화 추세
- ④ 자동차보험 증가, 고속철 개통, 인터넷 확산 등에 편승한 범죄의 증가현상을 통해 범죄의 기동화, 광역화 추세
- ⑤ 조직범죄 및 국제성범죄의 급증현상을 통해 범죄의 조직화·세계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 ⑥ 사회에 전과자 및 재범자가 늘고 있음을 확인
  - ※ 살인·강도·강간·방화·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50~70%
- ⑦ 아동·여성·노인·장애자·외국인근로자·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 증가

## 제5절 경찰의 역사적 교훈

### I. 지난 경찰의 功過

#### 1) 창설 60년에 즈음한 공과에 대한 평가

##### ① 일제의 식민지배와 왜곡된 근대경찰제도 이식

- 우리 근대 경찰제도는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강점의 수단으로 이식, 국민과 대립적 관계에서 출발
-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인해 경찰은 국민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인식,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낙인

##### ② 사회 혼란기의 편향적 역할로 일그러진 위상에 머무는 한계

-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유산을 떠안고 이를 답습하는 바람에 건국·호국의 초석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

##### ③ 권위적 통치체제와 관주도의 근대화 추진과정에서 “민주와 봉사”를 도외시키고 질서유지를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기형적 성장

- 경찰행정에 체계화된 군사행정기법을 도입하여 치안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치적 중립과 국민지향적 봉사 등 본연의 임무와 역할정립 노력에는 소홀

##### ④ 민주화 열기에 따른 “경찰의 역할과 위상 바로찾기”에 대한 자성에 “외부의 견제와 내부의 의지부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한 한계

- 민주·민생경찰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자성과 노력
- 시국치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 때문에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함

## ⑤ '91년 경찰법의 제정과 함께 독립외청 형태로 경찰청 발족

-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경찰상 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체질화된 외부눈치 살피기식 조직문화로 인해 고질적인 구습과 병폐를 청산하지 못함

## 2) 반성과 시사점

## ① 일제 식민경찰의 잔재 답습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시 획득 실패

- 일제 경찰의 권력편향적 잔재에 젖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위에 군림함으로써 정치에의 예측과 국민과의 괴리를 자초
  - '봉사와 질서'라는 본분을 깨우치지 못한 채 질서유지를 우선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미흡
  - 민주국가를 향한 산고 속에서 늘 국민과 대치하는 바람에 죽도록 고생하고도 비난을 면치 못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됨
- ⇒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 구시대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경찰로 거듭나야 함

## ② 自救勢力 不足으로 “國民의 警察”로 거듭날 수 있는 機會 상실

- 미래지향적 발상과 거시적 안목 부족으로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면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여 고비마다 결단성 있는 개선을 회피함으로써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악순환
- 전환기마다 수차례 경찰개혁 시도가 있었음에도 자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으로 본뜻이 변질되거나 중단
- 전 경찰관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도력과 추진력 부족으로 극복해야할

개혁의 난관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결과를 반복

⇒ 스스로 문제를 찾아 국민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거시적 안목으로 혁신을 지속 유지

## II. 경찰의 현주소 진단

① 조직내외의 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은 살리고, 약점(Weakness)은 극복하며, 기회(Opportunities)는 활용하고, 위협(Threats)은 억제

<표 28> 한국경찰의 강점·기회·위기(SWOT)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사분란한 조직체계</li> <li>● 뛰어난 문제 해결력</li> <li>● 강력한 인적 경쟁력</li> <li>● 경찰직에 대한 선호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악한 치안인프라</li> <li>● 미흡한 처우수준</li> <li>● 경직된 조직문화</li> <li>● 지나친 승진지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상승</li> <li>● 법질서의 중용성에 대한 인식 확산</li> <li>●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달</li> <li>● 자율과 분권의 국정기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안부담의 지속적 가중</li> <li>● 공권력 경시 현상의 만연</li> <li>● 미흡한 국민만족도</li> <li>● 일부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li> </ul>

## 1) 강 점 (Strength)

- ① 직업공무원으로 구성된 최대규모의 조직으로서 뛰어난 문제 해결력
  - 경찰청으로부터 지구대에 이르는 그물망式의 전국 네트워크
  - 일원화된 조직으로 상황발생시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대응 가능
  - 공권력의 상징으로 국가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집행력
  - 생활안전/수사/정보 등 업무의 종합성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용이
- ② 대다수 경찰관의 우수한 능력과 열정으로 강력한 인적 경쟁력 자량
  - 건국·구국·호국경찰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높은 헌신도
  - '2002월드컵'등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자부심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찰직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평가

## 2) 약 점 (Weakness)

- ① OECD선진국 및 치안수요 대비 열악한 치안 인프라
    - 경찰인력·예산·장비 등 기본 치안자원이 충분치 못함
- ※
-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519명(OECD 평균 377명)
  - └ 정부예산 중 경찰예산 4.3%(OECD 평균 6%)
- 격무에 상응하는 복지기반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
  - 단기발령에 따른 분야별 업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② 경찰 경쟁력의 핵심으로서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이 미진
- 업무보다는 계급에 집착하는 지나친 승진 지향성 팽배
  - 상하간, 입직간, 기능간 내부화합의 부족에 따른 갈등 양상
  - 문서과다, 보고만능주의, 지시의존 관행 등 관료주의적 병폐

### 3) 기 회 (Opportunities)

- ①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치안서비스와 경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국민의 최우선 욕구가 풍요에서 안전으로 전환
  - 범질서가 경제살리기 등 국정운영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확산
- ② 치안정책 추진에 우호적인 시대변화와 사회적 분위기
- Interpol 등 국제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및 Digital 기술 발달
  -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화의 기초 및 민주화 추세

### 4) 위 험 (Threats)

- ① 경찰이 해결해야 할 치안부담의 지속적 가중
- 범죄·테러·재난 등 “위험사회” 증후군의 급격한 증가
- ※ { 최근 10년간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는 87.8% 증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3.9명 : 美 1.9/ 英 1.2/ 日 1.2
- 범질서 무시 풍조 및 공권력 경시 현상의 만연
  - 사회적 가치의 다원화에 따른 주민 욕구 분출로 긴장감 증대
  - 첨단과학기술 발달과 사회병리현상에 따른 치안문제의 복잡다기화

- ② 치안행정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여전히 미흡함
-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치안은 아직도 기대수준에 못 미침
  - 일부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들의 이미지 평가도 저조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치안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며 선진국 도약 등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

## 제6절 비전과 전략적 방향

### 1) 조직혁신의 방향

- ① 조직혁신은 조직의 氣가 흐르는 경락과 경혈을 찾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 조직의 전략에 맞는 전략목표(경락)와 성과지표(경혈)를 발굴하여 균형있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
- ② 조직혁신은 단순히 병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뛰어넘어 원하는 표적에 원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스마트 필(smart pill)
- ③ 그러나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는 성급한 생각은 금물
-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정부혁신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
  - ※ 영국·뉴질랜드·호주·미국 등의 성공적 정부혁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핵심요소는 두 가지로 요약됨

- 능률과 효과성,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절차”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둔다는 것과
  - 고도로 집권화된 종래의 계층제 구조를 분권화된 관리체제로 대체한다는 것
  - 혁신은 미리 정해진 종착역이 아니라 끝없는 여정
- ④ 과거의 제도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은 과소평가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집중부각되는 점 경계
- 혁신은 과거의 좋은 점은 남기고 나쁜 면을 제거하기보다는 장단점을 가진 과거제도에서 장단점을 가진 전혀 다른 제도로 변화하는 것에 그칠 수 있음을 인식

※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4가지 행정개혁 중심원칙

- 繁文縟禮(red rape)를 제거
- 고객위주의 행정 추구
- 결과달성을 위해 공무원에게 자율을 부여
- 작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달성

## 2)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

- ①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스스로 인식하고 반응하는 지능형 조직으로의 변화
- 기존의 조직들은 단지 고유의 속성만 간직할 뿐 외부 환경변화에의 반응이 더디지만
  - 지능형 조직은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체처럼 스스로를 변형시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상변화 조직의 모습
- ※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 고체와 액체 사이를 수시로 오가면서 열을 조절하는 물질
- ② 지금까지의 경험·역량에 의존한 치안행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체계화하여 활용하는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전환

- ③ 경찰관들이 각종 규정의 좁은 틀 속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소극적 모습에서 탈피
- ④ 조직을 보다 고객 지향적으로 재조직
  - 서비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만처리절차를 마련
  - 권한이 없으면 규정만 준수하려고 하지만 권한이 책임과 함께 부여되면 사람들은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대폭 권한 위임

### 3) 조직혁신의 추진동력 확보

- ① 혁신에 대한 의구심은 끊임없이 제기되기 마련이고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
  - 그럴수록 정부혁신의 비전과 전략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무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공감하도록 해야 할 필요
  - 상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성을 높여야 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서는 아니됨
- ② 혁신의 비전과 전략이 일관되게 전달되면 사람들은 흉내만 내는 혁신이 아니라 진실로 무언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됨
  - 쉽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이해하지 못하면 설득하지 못함
  - 경찰혁신의 비전과 전략은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경찰관에게는 자극을 줌
  - 경찰혁신의 비전과 전략이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일관되고 명확하게 국민과 경찰관에게 전달되면 그것만으로도 급변하고 복잡한 현재를 헤쳐나가는 깃발의 역할을 할 것임

#### 4) 경찰의 장기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

##### (1) 비전과 미션

① 비전은 미래의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 미션은 현재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말함

- 미션지향적 조직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미션에 의해 인도되며 자율을 부여받는 조직이라는 의미
- 규정과 절차에서 해방되고 보다 혁신적이고 자율을 부여받기 때문에 신축적이고 유연하며 열정이 넘치는 조직이 될 수 있음
- 규정과 절차로부터의 해방은 조직의 구조·인사·예산·관리 등에 관한 불필요하고 낡은 억압적 조항을 폐지하는 것

⇒ 성공적인 공공조직은 비전과 미션이 뚜렷하고 비전과 미션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

② “매력 있는 경찰”을 미래의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인 경찰비전으로 정립

- 매력 있는 경찰은 ‘근무해 보고 싶은 자랑스러운 직업’으로서, ①신뢰받는 경찰, ②조화로운 인사, ③자부심 강한 경찰관, ④근무하고 싶은 직업, ⑤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조직문화를 의미

③ 지휘지침인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재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인 경찰의 미션으로 정립

##### (2) 전략적 방향

① 혁신 주도형 지식기반 구축

- 조직발전의 기회가 소수의 혁신그룹에 집중되는 미래 지식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혁신이라는 새로운 추진동력 확보 중요

- 경쟁 그룹들도 미래 환경변화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혁신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추세

※ 분석결과 혁신분야의 경쟁력은 경쟁그룹에 비해 강세

## ② 인적자원 Up-Grade

- 인적자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중요한 원천

※ 경찰의 경우 다른 경쟁그룹에 비해 인적자원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우수 인력 유인·활용·업그레이드의 효율적 시스템도 미흡한 실정

- 고령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

## ③ 치안시스템 재편

- 글로벌화 확산, 기술혁신 등 미래 환경변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수

※ 현재의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의 4단계 수직구조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곤란

- 지역위주의 관서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시스템 재편 필요

## ④ 3安(安心, 安全, 安樂) 확보

- 국민을 安心시킬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

-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사고로부터의 安全 추구

- 조직 구성원의 安樂한 복지 제공

## ⑤ 개방과 신뢰

- 개방을 통해 국민 등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형 시스템과 조직운영

- 사회적 신뢰도를 열린 시스템과 조직운영으로 제고

### (3) 주요 정책과제

- ① 정책과제는 quick-win과제와 장기과제로 구분, 2원적으로 접근
  - quick-win과제는 과제별 검토를 거쳐 관계기능 협의 및 필요한 경우 국·관회의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기능 통보
  - 장기과제 중 전략적 방향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 수결, 일반적인 방향제시과제는 검토후 보고서에 연계함

## 제3장 경찰 기능간 우선순위 평가

### 제1절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① 경찰 본연의 기능이 최적의 상태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경찰수요에 맞는 기능의 안배와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중요
- ② 기능간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능조정과 인력재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

#### 2) 조사 대상

- ① 원칙적으로 경찰의 정책결정 그룹인 총경급 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
  - 경찰 기능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경찰청 소속 계장 및 경정 경찰서장에 한하여 경정급을 추가 조사
  -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함
- ② 총 721명을 대상으로 설문 배포하여 570매를 분석에 사용
  - 일관성이 낮은 응답 및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는 제외(151매)

<표 29> 기관별 분석에 사용된 설문응답

구분	합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응답자 수	570	113	70	28	18	16	13	51	25	38	28	25	37	64	33	11
구성비 (%)	100	20	12	5	3	3	2	9	4	7	5	4	7	11	6	2

&lt;표 30&gt; 유효한 응답자 특성

구 분		응답자수	구성비(%)	구 분		응답자수	구성비(%)
연령	30~40세 미만	23	4	부서	경무	49	9
	40~50세 미만	205	36		생활안전	29	5
	50세 이상	342	60		수사	47	8
	합계	570	100		경비	37	7
계급	경정	125	22		정보	30	5
	총경	400	70		보안	30	5
	경무관 이상	45	<AHP의 개념>		홍보	5	1
	합계	570	100		감사	23	4
근무 년수	5년 미만	3	1		정보통신	14	2
	5~10년 미만	3	1		교통	13	2
	10~15년 미만	21	4		교육기관	12	2
	15~20년 미만	109	19		관서장(차장)	261	46
	20년 이상	434	76	기 타	13	2	
	합 계	570	100	합 계	570	100	

### 3) 조사 방법

#### ① AHP기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계층적 분석기법) 활용

- 목표달성을 위해 공헌하는 하위 요소들의 비교를 통해 기여정도에 따라 중요도를 부여, 중요도의 합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쌍대비교 방식을 적용, 자기 부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중치를 설정하는 도덕적 해이현상 방지

### AHP의 개념

-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은 최선에 가까운 대안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적합한 평가기준을 적용, 의사결정자의 중요도를 대안과 기준에 의해 쌍대비교하여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Satty가 개발한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AHP)임
- AHP 기법은 의사결정자의 중요도를 9점 척도로 쌍대비교
- 본 설문조사에서는 기능(대안)과 공공질서유지·개인권리보호·국민만족(평가기준)을 매트릭스 형태로 쌍대 비교함

#### 4) 조사 내용 및 절차

- ① 「생활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교통」 7개 분야와 경찰업무에 공통적인 특성요인인 「공공질서유지」, 「개인 권리보호」, 「국민만족」의 3개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조사

- 평가기준으로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을 선정하여 상호간 중요도를 쌍대비교에 의해 조사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일관성
공공질서유지	1				
개인권리보호		1			
국민만족			1		

※ 매트릭스 작성요령 및 분석절차

1) 국관별로 경찰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각선은 1, 공공질서유지가 개인권리보호보다 5배 중요하면 5, 개인권리보호가 공공질서유지보다 5배 중요하면 1/5이라고 기입

2) 기입한 비교표의 세로 합계에 의해 각 항목(빈칸)별 구성비를 구하고, 가로 평균(중요도)과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산출함

-  $CI = (\lambda_{max} - n) / (n - 1)$

▷  $\lambda_{max}$ 는 1)번의 기입 숫자와 중요도간의 행렬비교

▷ n은 평가기준의 개수

- 일관성 지수가 0.2이하이면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3) 중요도의 합은 1이어야 함

- 선택해야 할 대안으로 집행기능인 생활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교통을 선정하여 상호간 중요도를 쌍대비교하여 조사

구 분	생활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교통	중요도	일관성
생활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교통									

※ 매트릭스 작성요령 및 분석절차는 특성요인 작성 및 분석과 같음

- 조사결과를 아래의 양식으로 종합정리

구 분	공공질서 유지	개인권리 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가중치)	순 위
생활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교통					
중요도					

※ 중요도는 국관기능에 대해 중요하게 판단하는 가중치, 순위는 중요도 값의 순서임

## 제2절 특성요인 및 기능 중요도 분석 결과

### < 종합 결과 >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60	0.24	0.16	0.2728	2
수사	0.52	0.33	0.15	0.2733	1
경비	0.70	0.17	0.13	0.1291	3
정보	0.62	0.24	0.14	0.1250	4
보안	0.66	0.21	0.13	0.0572	6
외사	0.61	0.24	0.15	0.0542	7
교통	0.66	0.19	0.15	0.0884	5
중요도	<b>0.62</b>	0.23	0.15	1.00	

※ 관서별 평균을 통해 요인별 및 국관별 중요도를 산출

- 조사대상자들은 경찰업무가 ①공공질서 유지(62%) ②개인권리보호(23%) ③국

민만족(15%)의 순으로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기능별로는 ①수사 ②생활안전 ③경비 ④정보 ⑤교통 ⑥보안 ⑦외사 순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됨

※ 외사가 가장 낮은 순위로 나온 것은 조사자의 관심도가 낮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수사·생활안전이 55%의 중요도를 보인 반면, 교통·보안·외사의 합이 20%에 불과하고 경비와 정보의 중요도는 비슷

⇒ 전반적으로 시국치안보다 민생치안 영역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

### < 경 찰 청 >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55	0.28	0.17	0.26	2
수사	0.48	0.35	0.17	0.28	1
경비	0.69	0.18	0.14	0.13	3
정보	0.60	0.25	0.15	0.11	4
보안	0.63	0.22	0.15	0.06	7
외사	0.57	0.26	0.17	0.07	6
교통	0.64	0.19	0.17	0.09	5
중요도	<b>0.59</b>	0.25	0.16	1.00	

- 경찰청은 ‘공공질서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국민만족’ 항목이 0.16으로 평균 0.15보다 높게 평가
- 중요도가 가장 높은 기능은 수사로서 0.28임에 반하여, 중요도가 가장 낮은 기능은 보안으로 0.06

## &lt; 서 울 청 &gt;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64	0.22	0.14	0.28	1
수사	0.52	0.35	0.14	0.26	2
경비	0.71	0.17	0.12	0.13	3
정보	0.62	0.24	0.14	0.11	4
보안	0.66	0.22	0.12	0.06	7
외사	0.60	0.26	0.14	0.07	6
교통	0.65	0.18	0.16	0.09	5
중요도	<b>0.63</b>	0.23	0.14	1.00	

- 서울청은 ‘공공질서유지’가 ‘국민만족’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
- 중요도가 가장 높은 기능은 생활안전이며, 가장 낮은 기능은 보안

## &lt; 부 산 청 &gt;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54	0.31	0.15	0.26	2
수사	0.51	0.37	0.13	0.29	1
경비	0.66	0.20	0.13	0.12	4
정보	0.63	0.24	0.13	0.13	3
보안	0.64	0.24	0.13	0.06	7
외사	0.57	0.28	0.15	0.06	6
교통	0.66	0.19	0.15	0.08	5
중요도	<b>0.60</b>	0.26	0.14	1.00	

- 부산청은 ‘공공질서유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개인권리보호’가 0.26으로 평균 0.23보다 높은 결과
- 수사에 대한 중요도가 경남청과 함께 가장 높게 평가, 보안과 외사는 비슷

## &lt; 대구 청 &gt;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59	0.26	0.16	<b>0.27</b>	1
수사	0.52	0.32	0.16	<b>0.26</b>	2
경비	0.64	0.21	0.16	<b>0.13</b>	3
정보	0.61	0.24	0.14	<b>0.12</b>	4
보안	0.63	0.23	0.13	<b>0.06</b>	6
외사	0.59	0.28	0.14	<b>0.06</b>	7
교통	0.61	0.22	0.17	<b>0.10</b>	5
중요도	<b>0.60</b>	0.25	0.15	<b>1.00</b>	

- 대구청은 '공공질서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평균인 0.62에는 미달
- 대구청은 특히 교통에 대한 중요도가 0.10으로 평균인 0.088에 비해 높게 평가

## &lt; 인천 청 &gt;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59	0.23	0.19	0.29	1
수사	0.57	0.28	0.15	0.24	2
경비	0.69	0.15	0.16	0.12	3
정보	0.60	0.21	0.19	0.12	4
보안	0.68	0.19	0.13	0.06	7
외사	0.62	0.22	0.16	0.06	6
교통	0.64	0.18	0.18	0.11	5
중요도	<b>0.63</b>	0.21	0.16	1.00	

- 인천청은 상대적으로 '개인권리보호'가 덜 중요하다고 평가
- 인천청은 생활안전이 수사와의 격차가 0.05에 이를 정도로 생활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

### < 울 산 청 >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58	0.25	0.17	0.29	1
수사	0.49	0.36	0.15	0.26	2
경비	0.70	0.19	0.11	0.12	4
정보	0.67	0.21	0.12	0.13	3
보안	0.66	0.22	0.11	0.06	6
외사	0.54	0.28	0.18	0.04	7
교통	0.62	0.18	0.20	0.10	5
중요도	0.61	0.24	0.15	1.00	

- 울산청은 他청에 비해 ‘공공질서유지’를 0.01이 낮게, ‘개인권리보호’ 및 ‘국민만족’을 각각 0.01이 높게 평가
- 생활안전·교통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외사에 대한 중요도는 他청에 비해 낮게 평가

### < 경 기 청 >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63	0.23	0.14	0.29	1
수사	0.52	0.34	0.14	0.26	2
경비	0.70	0.18	0.13	0.13	4
정보	0.65	0.22	0.14	0.13	3
보안	0.65	0.22	0.13	0.05	7
외사	0.61	0.24	0.16	0.05	6
교통	0.66	0.19	0.15	0.09	5
중요도	0.63	0.23	0.14	1.00	

- 경기청의 평가기준 분포는 평균 분포와 유사
- 생활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은 반면, 보안·외사의 중요도는 他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lt; 강 원 청 &gt;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61	0.24	0.15	0.21	2
수사	0.53	0.34	0.13	0.29	1
경비	0.69	0.18	0.13	0.15	3
정보	0.60	0.26	0.14	0.13	4
보안	0.64	0.22	0.14	0.06	7
외사	0.62	0.23	0.15	0.06	6
교통	0.66	0.18	0.16	0.10	5
중요도	0.62	0.24	0.14	1.00	

- 강원청은 수사에 대한 높은 중요도와 함께 ‘개인권리보호’를 중요하게 평가
- 수사에 대한 중요도가 특히 높게, 상대적으로 생활안전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평가

## &lt; 충 북 청 &gt;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56	0.28	0.16	0.30	1
수사	0.54	0.31	0.15	0.25	2
경비	0.69	0.17	0.14	0.14	3
정보	0.60	0.27	0.13	0.10	5
보안	0.64	0.22	0.15	0.04	7
외사	0.59	0.26	0.15	0.06	6
교통	0.64	0.19	0.16	0.11	4
중요도	0.61	0.24	0.15	1.00	

- 충북청은 他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질서유지’보다 ‘국민만족’이 중요하다고 판단
- 생활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정보·보안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

## &lt; 충 남 청 &gt;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59	0.22	0.19	0.26	2
수사	0.46	0.38	0.16	0.29	1
경비	0.67	0.18	0.15	0.11	4
정보	0.62	0.19	0.19	0.15	3
보안	0.65	0.21	0.14	0.05	6
외사	0.57	0.24	0.18	0.05	7
교통	0.67	0.15	0.18	0.09	5
중요도	0.61	0.22	0.17	1.00	

- 충남청은 특히 ‘공공질서유지’보다 ‘국민만족’이 중요하다고 판단
- 충남청은 他청에 비해 경비·보안·외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

## &lt; 전 북 청 &gt;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56	0.26	0.18	0.29	1
수사	0.44	0.38	0.18	0.28	2
경비	0.70	0.16	0.14	0.14	3
정보	0.59	0.25	0.16	0.12	4
보안	0.61	0.23	0.16	0.05	6
외사	0.56	0.28	0.16	0.04	7
교통	0.66	0.19	0.15	0.08	5
중요도	0.59	0.25	0.16	1.00	

- 전북청은 특히 ‘공공질서유지’보다 ‘국민만족’·‘개인권리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
- 전북청은 회사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

## &lt; 전 남 청 &gt;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65	0.22	0.13	0.30	1
수사	0.52	0.35	0.13	0.28	2
경비	0.70	0.20	0.10	0.13	4
정보	0.64	0.24	0.12	0.13	3
보안	0.67	0.23	0.10	0.05	6
외사	0.62	0.26	0.12	0.05	7
교통	0.70	0.18	0.12	0.06	5
중요도	0.64	0.24	0.12	1.00	

- 전남청은 국민만족보다 공공질서유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
- 생활안전에 대한 중요도를 특히 높게 평가하고, he청에 비해 교통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

## &lt; 경 북 청 &gt;

구 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 위
생활안전	0.58	0.25	0.17	0.25	2
수사	0.51	0.33	0.15	0.27	1
경비	0.69	0.17	0.14	0.13	4
정보	0.61	0.23	0.16	0.13	3
보안	0.66	0.22	0.12	0.09	5
외사	0.61	0.23	0.16	0.05	7
교통	0.64	0.20	0.16	0.08	6
중요도	0.62	0.23	0.15	1.00	

- 경북청은 평가기준에 있어 평균비율과 유사하게 조사
- 경북청의 경우 he청에 비해 민생치안(수사·생활안전) 영역보다 시국치안(정보·보안)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lt; 경 남 청 &gt;

구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위
생활안전	0.59	0.24	0.16	0.24	2
수사	0.50	0.35	0.16	0.30	1
경비	0.67	0.19	0.13	0.13	4
정보	0.55	0.29	0.16	0.13	3
보안	0.57	0.29	0.14	0.05	7
외사	0.51	0.33	0.17	0.05	6
교통	0.65	0.18	0.18	0.10	5
중요도	0.57	0.27	0.16	1.00	

- 경남청은 특히 '공공질서유지'보다 '개인권리보호' 및 '국민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 수사에 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 보안·외사의 중요도는 특히 낮게 평가

## &lt; 제 주 청 &gt;

구분	공공질서유지	개인권리보호	국민만족	중요도	순위
생활안전	0.54	0.28	0.18	0.25	2
수사	0.54	0.29	0.17	0.28	1
경비	0.70	0.16	0.14	0.11	5
정보	0.64	0.21	0.15	0.11	4
보안	0.62	0.25	0.13	0.06	6
외사	0.66	0.21	0.13	0.05	7
교통	0.66	0.18	0.16	0.14	3
중요도	0.62	0.23	0.15	1.00	

- 제주청은 평가기준에 있어 평균비율과 유사하게 조사
- 타청에 비해 교통에 대한 중요도를 특히 높게 평가, 보안·외사·경비·정보는 낮게 평가

## 1) 조사 결과의 활용

① 중요도(가중치) 수치는 기능과 인력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기능별 중요도는 각 기능이 경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중요도 비율에 따라 인력·예산의 배치를 다르게 할 수 있음

※ 수사가 0.2733의 가중치가 나오고, 외사가 0.0542의 가중치가 나왔다면, 조사 대상자들은 수사에 외사보다 약 5배의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여도 된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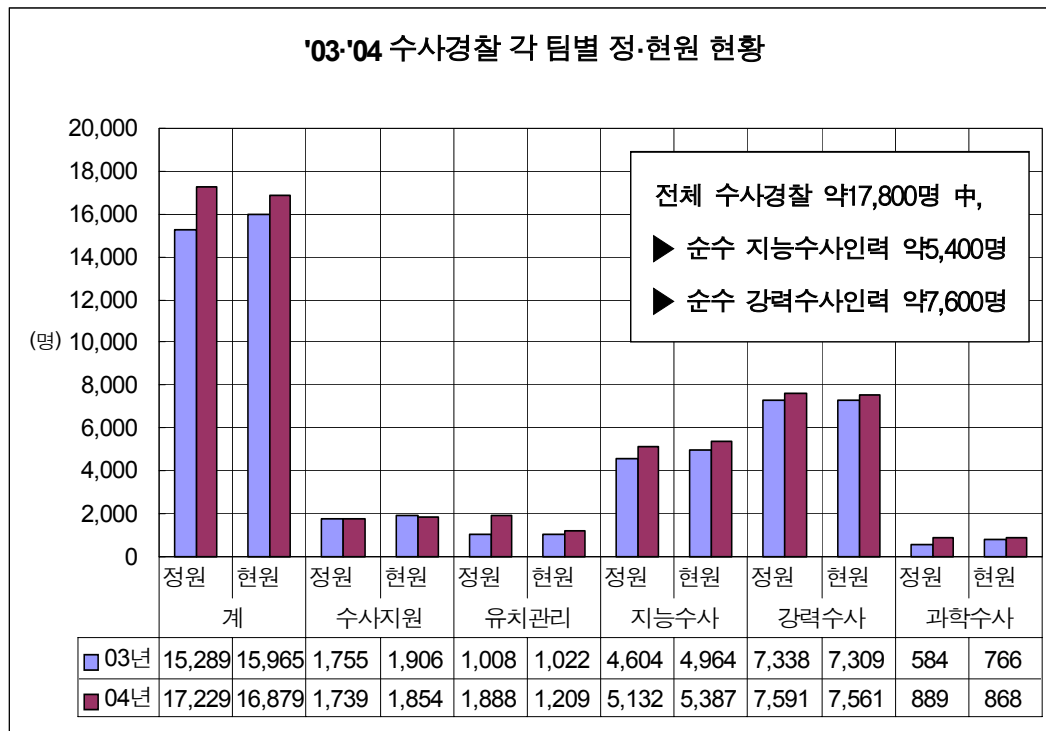
② 평가기준(공공질서유지-개인권리보호-국민만족)의 비중은 경찰의 정책수립·집행時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가치로 활용

- 경찰은 '국민만족'보다 '공공질서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과

## 제4장 적정 수사인력 산출

### 제1절 수사인력 및 사건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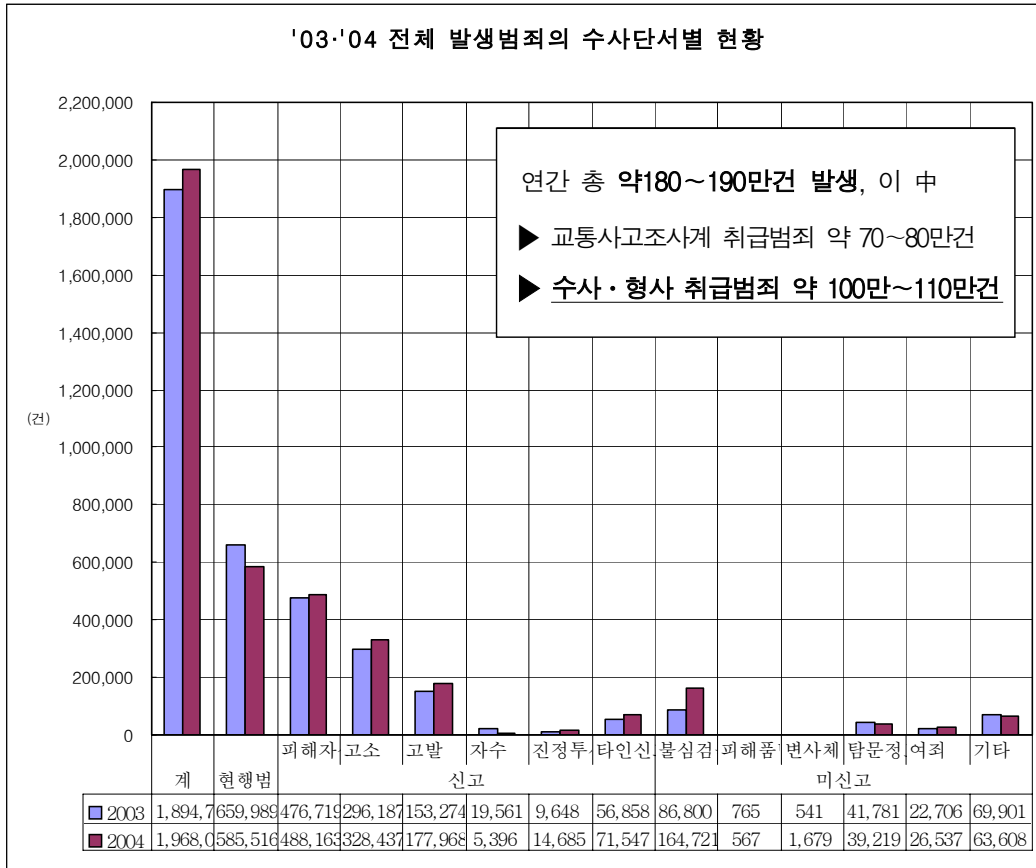
<표 31> '03·'04년 수사경찰 정·현원 현황



※ 당해년도 12. 31 기준 - 수사국 제공

※ 2005. 10. 31 현재 수사경찰 현원은 17,831명이며 이 중 지원인력을 제외한 순수 수사인력은 강력 7,618명(04년 대비 +57명), 지능 5,399명(04년 대비 +12명)임

<표 32> 「202 통계」에 따른 '03·'04년 전체 발생범죄의 수사단서별 현황



◆ 위 현황은 '03년·'04년 「202통계」상 범죄발생건수로, 해양경찰청 및 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취급사건 수를 제외하고 “범죄의 수사단서별 죄종현황에 따른 분류” 항목으로 산출한 통계

◆ '03년·'04년 전체처리건수 1,857,130건·1,930,985건 중 교통사고조사계 취급사건 수(교통사고·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는 각각 782,023건, 849,649건으로 **형사(강력)·수사(지능)요원**의 '03년·'04년 **취급 사건 수**는 각각 **1,075,107건, 1,081,336건**

## 제2절 KDI 방식에 따른 소요인력 분석결과

### 1) 기존 수사인력 증원계획 내용 검토

#### (1) 수사인력 증원 주장의 근거 : 92년 KDI 보고서

-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KDI),1992.4.)에서 KDI가 사용한 계산식에 따라 적정인력을 산출

<표 33> KDI 산정 사건 1건당 처리소요시간

구 분	외 근 형 사	조 사 요 원
① 첩보수집·내사	4시간	
② 피해자 조사	7.5시간(1.5인 x 5시간)	4.5시간(1.5인 x 3시간)
③ 피의자 조사	7.5시간(1.5인 x 5시간)	4.5시간(1.5인 x 3시간)
④ 참고인 조사	15시간(3인 x 5시간)	9시간(3인 x 3시간)
⑤ 기타서류작성 등	6시간	7시간
<b>계</b>	<b>40시간</b>	<b>25시간</b>

⇒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의 사건 1건 처리 시 소요시간을 산정 후, 연2,400시간(1일 8시간 × 1년 300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인 연간 적정 처리건수 산출

<표 34> KDI 산출 1인당 연간 적정 처리건수

외 근 형 사(강력)	2400 시간 / 40 시간 = 60 건
조 사 요 원(지능)	2400 시간 / 25 시간 = 96 건

&lt;표 35&gt; 「CIMS 입력 사건수 ÷ KDI의 1인당 연간 적정처리건수」로 적정 수사인력 산출

구 분	형사(강력)		조사(지능)		산출내역
	'04년	'05년	'04년	'05년	
처리건수(건)	931,463	572,666	1,171,204	852,455	CIMS 입력자료 집계 (이송접수 포함) '05년은 1. 1~10. 31 간 처리건수의 환산치
적정인력(명)	15,524	9,544	12,200	8,880	年 처리건수 / 1人 연간 적정처리건수
정·현원(명)	7,564	7,618	5,219	5,399	각 2004. 12. 31 (정원) 2005. 10. 31 (현원) 기준
필요인력(명)	+7,960	+1,926	+6,981	+3,481	적정인력 - 현정원

## (3) 향후 수사인력 증원계획

- '05 ~ '07 3년 간 각각 1,089명, 1,386명, 649명 등 총 3,124명 증원 요청

※ '05년도 877명 증원('06년도 이후 증원 규모는 행자부와 협의 중)

- 자체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은 '09년 필요 수사인력을 '05. 5. 31 現在 17,309명  
보다 31%(5,389명) 증가한 22,698명으로 추산

## 2) 기존 수사인력 산출 방식의 문제점

(1) 처리건수를 「CIMS 입력자료」에서 추출, 실제보다 처리건수 과장

〈표 36〉 연도별 CIMS 입력자료 기준 1인당 처리건수 비교

구 분	계			형사(강력)			조사(지능)		
	처리건수 (건)	인원 (명)	1인 처리건수 (건)	처리건수 (건)	인원 (명)	1인 처리건수 (건)	처리건수 (건)	인원 (명)	1인 처리건수 (건)
03년	1,832,144	11,306	162.0	569,572	6,880	82.8	1,262,572	4,426	285.3
04년	2,102,667	12,783	164.5	931,463	7,564	123.1	1,171,204	5,219	224.4
05년	1,425,121	13,017	109.5	572,666	7,618	75.2	852,455	5,399	157.9

- ◆ 형사(강력)·조사(지능) 인원은 수사지원·유치관리·과학수사를 제외한  
실 수사요원
- ◆ 처리건수는 CIMS 내 입력된 전체자료 중 교통사범과 해양경찰청 처리  
사건을 제외한 건수(송치종결·미제편철·이송종결 등 포함)
- ◆ '05년 처리건수는 '05. 1. 1~10. 31까지의 처리건수인 1,187,601건을 1년  
치로 환산한 예상처리건수

- '03년 10월 CIMS 도입 후 제도 정착기인 '03년·'04년 입력자료의 경우, CIMS 도  
입 전 이미 종결된 사건까지 소급 입력

⇒ 실제로는 당해연도에 취급하지 않은 사건이 집계되어 부정확

※ 소급입력이 대부분 완료된 '05년의 경우, 1년치 환산 처리건수가  
1,425,121건으로, '03년·'04년 처리건수인 1,832,144건·2,102,667건  
보다 약40만~70만건 감소하여 이를 반증

- CIMS 입력자료는 고소·고발사건처리 보다 업무량이 극히 적은 이송사건을 이송  
시마다 신규 고소·고발사건접수처럼 집계

## ◆ '05년 이송사건 현황을 보면,

'05. 1. 1~10. 31 간 조사(지능) 요원의 이송처리 건수는 약234,291건으로 이를 1년 치로 환산하면 약 281,149건에 달함

## ◆ 그런데 수사업무처리량을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 고소사건 : 고소인조사+피의자조사+참고인조사+대질조사+기타조사
- 고발사건 : 피의자조사+기타조사

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며 이런 이유로 KDI가 고발사건 처리시간을 고소사건의 1/5 라고 분석한 바 있고,

## ◆ 이송사건(고소)의 경우,

- A 경찰서 : 고소인조사 → B 경찰서로 이송
- B 경찰서 : 피의자조사 → C 경찰서로 이송
- C 경찰서 : 참고인조사 → A 경찰서로 반송

등과 같이 CIMS 입력자료 상에는 총 3 건의 사건이 접수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나, 수사업무 처리량은 이들 3 건을 합쳐야 1개 사건의 처리량과 같으므로 최초접수시만 처리건수로 보는 것이 타당

(2)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한국개발연구원(KDI), 1992. 4.) 에서 제시한 형사·조사요원 연간 적정처리건수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

- 사무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 업무시간 · 항목 및 소요시간 수정 필요

### 제3절 소요인력 분석

(1) KDI 의 산출방식은 그대로 적용하되, 처리사건 수는 CIMS 입력자료 대신 202 통계 상 발생건수 적용

① CIMS 입력자료 중 도입 초반 입력된 당해년도 이전 취급사건 및 중복집계된 이송사건 배제를 위해 202통계 상 발생사건 수 적용

<표 37> 연도별 202통계 기준 1인당 처리건수 재산출

구분	계			형사(강력)			조사(지능)		
	처리건수 (건)	인원 (명)	1인 처리건수 (건)	처리건수 (건)	인원 (명)	1인 처리건수 (건)	처리건수 (건)	인원 (명)	1인 처리건수 (건)
03년	1,075,107	12,273	87.60	598,767	7,309	81.92	476,340	4,964	95.96
04년	1,081,336	12,948	83.51	552,513	7,561	73.07	528,823	5,387	98.12
05년	1,000,398	13,017	76.85	524,878	7,618	68.90	475,520	5,399	88.08

- ◆ '03·'04 「202통계」 “범죄의 수사단서별 최종현황에 따른 분류” 상 발생건수 중,
  - 「○ 형사 = 단서 中, 현행범+피해자신고(지능범 제외)+자수+타인신고+미신고
  - 조사 = 단서 中, 고소+고발+진정투서+피해자신고(지능범)」 로 집계
- ◆ '05년 처리건수는 1. 1~10. 31 까지의 발생건수를 1년 치로 환산한 통계로 「최종별 수사체제」 시행을 감안, 취급최종별로 발생건수 분류
- ◆ '05년 CIMS 입력자료 상 조사(지능)요원 처리건수는 852,455건으로, '05년 이송사건 281,149건 제외 후 202통계 상 발생건수와 약 95,786건의 오차 발생  
⇒ CIMS는 접수와 동시에 집계되나 202통계의 경우 발생원표 작성과 동시에 집계(통상 송치·이송·미제편철 등 시 작성)되어 시간차가 있기 때문

&lt;표 38&gt; 「202통계 상 발생건수 ÷ KDI의 1인당 연간 적정처리건수」로 적정 수사인력 산출

구 분	형사(강력)		조사(지능)		산출내역
	'04년	'05년	'04년	'05년	
처리건수(건)	552,513	524,878	528,823	475,520	202통계(이송사건은 최초 접수만 적용) '05년은 1. 1~10. 31 간 처리건수의 환산치
적정인력(명)	9,209	8,748	5,509	4,953	年 처리건수 / 1인 연간 적정처리건수
정·현원(명)	7,564	7,618	5,219	5,399	각 2004. 12. 31 (정원) 2005. 10. 31 (현원) 기준
필요인력(명)	+ 1,648	+ 1,130	+ 122	- 446	적정인력 - 현정원

(2) JMAC과 공동연구를 통해 KDI 산출 공식 중 주요 상·변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02 통계 상 발생건수 적용

① 주요 상수 선정 및 조정을 위한 연구 개요

- 치안연구소와 「경찰청 조직진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전문기관(JMAC)과 적정수사인력 산출을 위해 공동연구

◆ 사건 1건 처리 시 필요한 업무수행 항목을 9개 항목으로 설정  
(기존 KDI 연구는 5가지 항목 선정)

◆ 전국 233개 경찰서 강력·폭력(이상 외근형사)·지능·경제(이상 내근형사)팀의 팀장 및 팀원 각1명씩, 총 1,322명을 대상으로 각 항목별 처리에 소요되는 최대~최소시간에 대해 설문 조사

<표 39> 사건 1건 처리 시 필요한 9개 업무수행 항목 선정

구 분		외근형사 및 조사요원
업 무 수 행	기 존 KDI 선 정 변 수	1. 첩보수집·내사
		2. 피해자 조사
		3. 피의자 조사
		4. 참고인 조사
		5. 기타서류작성 등
항 목 선 정	JMAC과 공 동 연 구 시 신 규 선 정 변 수	6. 대질 조사 및 증거수집
		7. 사전지휘제도신설
		8. 전산입력 및 통신수사 등
		9. 영장집행 등 외근업무

※ 기존 KDI 연구에 따른 5가지 항목은 그대로 인정하되, 최종별 수사체제 구축에 따른 조사요원 외 근화, 증거위주의 과학수사로의 전환, 검사사전지휘제도신설 및 통신수사 등 수사절차신설에 따른 4개 항목 신규선정

③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상수변화에 따른 연간 근무시간 조정

- 형사·조사 : 주당 40시간 x 1년(52주) = 2080시간

④ 설문조사를 통해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시간 산출

◆ 외근형사 사건처리 시 필수 업무항목별 소요시간조사

<표 40> 응답 현황 (전국 강·폭력팀 749명)

항 목	응답자 수(명)	구성비 (%)	결 측	구성비 (%)	합계(명)	구성비 (%)
1. 첩보수집 및 내사	508	68	241	32	749	100
2. 피해자 조사	686	92	63	8	749	100
3. 피의자 조사	697	93	52	7	749	100
4. 참고인 조사	700	93	49	7	749	100
5. 기타서류 작성	700	93	49	7	749	100
6. 대질조사 및 증거수집	658	88	91	12	749	100
7. 사전지휘제도신설	636	85	113	15	749	100
8. 전산입력 및 통신수사	610	81	139	19	749	100
9. 영장집행 및 외근	614	82	135	18	749	100

※ 결측이란, 기입하지 않거나 오류로 기입한 설문항목이며, 첩보수집 및 내사업무의 결측은 업무특성상 기입한 시간의 최대와 최소차이가 커 결과를 왜곡하는 제외된 응답자의 숫자가 포함된 것임

&lt;표 41&gt; 설문조사 분석결과(평균)

(단위:시간)

지방청	계	첩보수집 및 내사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기타 서류 작성	대질조사 및 증거수집	사전지휘 제도신설	전산입력 및 통신수사	영장집행 및 외근
서울청	42.7	19.6	2.1	3.5	1.5	2.5	3.6	2.9	2.5	4.5
부산청	35.3	18.5	1.8	2.4	1.4	1.9	3.5	1.9	1.3	2.6
대구청	29.6	10.7	1.8	2.5	1.1	1.7	3.4	2.6	2.3	3.6
인천청	35.1	17.8	1.8	2.7	1.3	1.6	3.0	1.8	1.9	3.1
울산청	27.4	14.4	1.2	2.4	1.2	1.0	2.3	1.0	2.0	1.7
경기청	32.3	14.9	1.7	2.5	1.4	1.9	2.6	2.5	1.7	3.0
강원청	26.9	11.4	1.6	2.5	1.1	1.6	2.4	1.9	2.0	2.5
충북청	40.8	19.4	2.2	2.8	1.6	2.3	4.2	2.2	3.1	2.8
충남청	32.8	18.1	1.8	2.4	1.2	1.7	2.8	1.7	1.3	1.9
전북청	25.0	9.3	1.7	2.4	1.3	1.6	2.5	2.5	1.4	2.3
전남청	25.6	7.2	2.4	2.9	1.6	1.8	3.1	1.7	1.9	3.1
경북청	39.1	23.1	1.6	2.1	1.2	2.0	2.4	2.3	2.2	2.3
경남청	28.3	14.1	1.3	2.0	1.1	1.4	2.5	1.6	1.4	2.9
제주청	18.7	4.6	2.0	2.4	1.4	3.6	2.1	0.9	0.7	1.0
평균	32.2	15.3	1.8	2.5	1.3	1.9	2.9	2.0	1.8	2.7

◆ 내근형사 사건처리 시 필수 업무항목별 소요시간조사

(전국 지능·경제팀 573명)

<표 42> 응답 현황

항 목	응답자수(명)	구성비(%)	결측	구성비(%)	합계(명)	구성비(%)
1.첩보수집 및 내사	335	58.5	238	41.5	573	100
2.피해자 조사	521	90.9	52	9.1	573	100
3.피의자 조사	528	92.1	45	7.9	573	100
4.참고인 조사	519	90.6	54	9.4	573	100
5.기타서류 작성	529	92.3	44	7.7	573	100
6.대질조사 및 증거수집	503	87.8	70	12.2	573	100
7.사전지휘제도신설	476	83.1	97	16.9	573	100
8.전산입력 및 통신수사	479	83.6	94	16.4	573	100
9.영장집행 및 외근	483	84.3	90	15.7	573	100

<표 43> 설문조사 분석결과(평균)

(단위:시간)

지방청	계	첩보수 집 및 내사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기타서류 작성	대질조사 및 증거수집	사전지 휘제도 신설	전산입 력 및 통신수 사	영장집 행 및 외근
서울청	19.4	3.2	1.7	2.8	1.2	1.6	3.3	1.7	1.3	2.5
부산청	24.8	6.0	1.8	3.1	1.4	2.1	3.3	2.5	1.7	3.0
대구청	18.4	2.7	1.9	2.7	1.2	1.6	3.1	1.8	0.9	2.5
인천청	19.4	2.4	2.5	3.4	1.4	1.5	2.6	1.3	1.1	3.1
울산청	25.6	4.6	2.5	4.8	1.4	1.3	4.5	1.9	1.7	2.9
경기청	17.4	2.7	1.6	2.6	1.2	1.5	2.8	1.4	1.1	2.3
강원청	21.1	4.6	1.6	3.4	1.4	1.5	3.4	2.2	1.1	2.0
충북청	25.4	5.5	2.3	4.7	1.7	1.8	3.4	2.0	1.4	2.6
충남청	20.7	3.8	1.9	3.3	1.3	1.8	3.2	1.8	1.4	2.3
전북청	22.0	3.9	2.0	3.0	1.5	2.3	3.2	2.0	1.4	2.6
전남청	20.7	3.8	2.4	2.9	1.6	1.3	3.1	1.6	1.5	2.5
경북청	19.3	3.8	1.8	2.7	1.3	1.6	2.7	1.8	1.2	2.4
경남청	22.0	4.6	2.2	3.0	1.4	1.8	2.9	1.9	1.6	2.7
제주청	18.6	-	2.3	2.9	1.0	2.8	3.6	1.5	1.3	3.3
평균	21.3	4.0	2.0	3.2	1.4	1.7	3.2	1.8	1.3	2.6

&lt;표 44&gt;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내·외근 별 사건 1건 처리 시 평균소요 시간

지방청 구 분	사건1건 처리 시 평균소요시간 (외근 행사)	편 차	사건1건 처리 시 평균소요시간 (내근 행사)	편 차
서울청	42.7	- 10.49	19.4	1.97
부산청	35.3	- 3.13	24.8	- 3.50
대구청	29.6	2.64	18.4	2.95
인천청	35.1	- 2.93	19.4	1.97
울산청	27.4	4.84	25.6	- 4.22
경기청	32.2	0.01	17.4	3.93
강원청	26.9	5.31	21.1	0.23
충북청	40.8	- 8.59	25.4	- 4.02
충남청	32.8	- 0.65	20.7	0.59
전북청	25.0	7.20	22.0	- 0.63
전남청	25.6	6.64	20.7	0.62
경북청	39.1	- 6.95	19.3	2.01
경남청	28.3	3.90	22.0	- 0.67
제주청	18.7	13.47	18.6	2.74
평 균	32.2 시간		21.3 시간	

※ 응답 중 최대소요시간과 최소소요시간의 편차가 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최소소  
요시간 간 지방청별 평균값의 중간값을 선택·적용

본 건 설문조사에 대한 「JMAC」 분석보고서 별첨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1인당 연간 적정처리건수 및 필요인력 산출

◆ 설문조사 결과(처리소요시간)에 따른 1인당 연간 적정처리건수

외 근 형 사(강력)	2080 시간 / 32.3 시간 = 65 건
조 사 요 원(지능)	2080 시간 / 21.3 시간 = 98 건

<표 45> 「202통계 상 발생건수 ÷ JMAC의 1인당 연간 적정처리건수」로 적정 수사인력 산출

구 분	형사(강력)		조사(지능)		산출내역
	'04년	'05년	'04년	'05년	
처리건수(건)	552,513	524,878	528,823	475,520	202통계(이송사건은 최초 접수만 적용) '05년은 1. 1~10. 31 간 처리건수의 환산치
적정인력(명)	8,500	8,075	5,396	4,852	年 처리건수 / 1人 연간 적정처리건수
현 원(명)	7,564	7,618	5,219	5,399	각 2004. 12. 31 (정원) 2005. 10. 31 (현원) 기준
필요인력(명)	+ 936	+ 457	+ 177	- 547	적정인력 - 현정원

### 제4절 적정 수사인력 산출

1) 202 통계 상 발생사건을 KDI 연간 적정처리건수 「형사:60건, 조사:96건」 (연 2400시간 근무 시)대로 처리하려면,

⇒ '04년 형사 : 1,648명 증원 필요, 조사 : 122명 증원 필요

⇒ '05년 형사 : 1,130명 증원 필요, 조사 : 446명 감축 가능

2) 202 통계 상 발생사건을 JMAC 연간 적정처리건수 「형사:65건, 조사:98건」 (연 2080시간 근무 시)에 맞추려면,

⇒ '04년 형사 : 936명 증원 필요, 조사 : 177명 증원 필요

⇒ '05년 형사 : 457명 증원 필요, 조사 : 547명 감축 가능

## 종합의견

### 1) 산출결과 분석

(1) '04년·'05년 발생사건 대비 수사인력은 형사인력이 약457명~1,648명 부족, 조사인력이 547명 과잉~177명 부족으로,

(2) 전체 수사인력은(형사+조사) **약 10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연도별 사건 발생 건수가 상이한 점, 사건종결(원표입력)과 동시에 처리건수로 집계되는 202통계의 특성, '05년 발생사건 수가 1년 추정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사인력이 적정인력보다 많다는 산술적인 수치는 크게 유의미 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

### 2) 적정 수사인력 산출 시 추가 검토 필요사항

⇒ 개개인의 사무량 측정을 통한 인력산출방법은“있어야만 할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그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경찰의 경우 수행하는 기능이 매우 포괄적이고 방대하며 주변 치안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가 커 사무량을 100% 산출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형사입건하지 않더라도 입건 시를 대비,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채증을 하는 경우는 사건처리건수로 집계되지 않는 업무 수행 항목임

#### (1) 경찰조직 外的 변수 검토 필요사항

① 「**광역화·지능화·홍포화**」 하는 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 수사 전문성의 지속적 제고 필요

⇒ 총 범죄는 최근 10년 간 50.4% 증가, 「살인·강도·절도·강간·절도·폭력」 등 중요 5대 범죄는 약90%, 사기사건은 약200% 증가

② 인터넷 해킹 등 기존의 범죄와는 다른 양상의 **신종범죄** 급증

※ '04년 인터넷 이용인구는 3,000만 명, 사이버 범죄는 '00년 2,444건에서 '04년 77,099건으로 약 30배 증가

③ 범죄 신고율 극히 저조 및 **암수범죄** 다수 존재

⇒ 통계상 범죄발생건수보다 많은 범죄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가능성 상존

※ 주거침입절도에 대한 범죄피해 사실의 신고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4%만이 신고하였다고 답변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I)」 최인섭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④ '04년 검거된 범죄자의 56.3%는 재범자이며, 살인 63.2%, 강도 63.1% 등 중요범죄의 재범률이 평균을 상회

⇒ **범죄수사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수사요원 1인당 적정처리건수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참고로, 이와 같은 내·외적 변수를 사용한 거시적 연구인 **치안연구소**의 『향후 치안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 경찰인력규모에 관한 연구』(별첨 1 참조)에 따르면, 수사분야의 경우, **총 수사인력 기준 334명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05. 5. 31 현재)

(2) 경찰조직 內的 변수 검토 필요사항

① 관서별 사건처리 건수 편차 문제 고려

⇒ '04년 각 지방청별 수사요원 1인이 처리한 4대 강력범죄 및 15개 지능범죄 건수를 보면, 강력범죄는 경기의 강력범죄 수사요원이 부산의 강력팀 수사요원보

다 2.18배 더 처리하고, 지능범죄는 충북의 지능팀 수사요원이 인천의 지능팀 수사요원보다 1.75배 더 처리

“관서 간 최대 2배 편차 발생” (별첨 2 참조)

- ※ 현 관서별 정원이 기본적으로 업무량을 고려하여 편성되어 있으나,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향후 수사인력 증원문제와 함께 정원 조정의 유연성 확보 문제 병행 검토 필요

② 개인별 사건처리 건수(능력)의 편차 문제 고려

⇒ 서울 남대문 경찰서 조사계(지능팀)의 경우, '04년 최다 사건처리자(363건), 최저 사건처리자(140건) 간 편차가 한 달 평균 18.58건에 달함

- ※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 요구에 맞는 수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시 교육가능 인원 확보 필요

## &lt;별첨 1&gt;

## 『향후 치안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 경찰인력규모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이상현 등 3명 공동연구, 2002. 5.)

- 1) '95 치안연구소가 작성한 경찰행정지표를 활용, 형사·수사기능의 행정지표를 각각 4가지 항목으로 분류

## ◆ 수사·형사 업무치안행정지표

수 사	조사	고소사건 접수건수 고발·진정·탄원·내사사건 접수건수
	범죄감식	현장감식요구사건 발생건수 형사입건피의자수
	유치장관리	유치인원수
	불법시위 사건조사	불법시위사건 관련 피의자수(조사대상 피의자수)

형 사	강력사건	강력범죄 발생(인지)건수
	폭력사건	강력범죄 발생(인지)건수
	절도사건	강력범죄 발생(인지)건수
	기소중지자 및 용의자 공조수사	기소중지건수 및 타서 의뢰사건 접수건수

- 2) 「경찰공무원 정원, 경찰예산」 등을 기본변수로, 「고소·고발건수, 중요범죄발생건수」 등을 독립변수로, 「수사·형사인력」을 종속변수로 각각 선정, 단계적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 실시

◆ 다중회귀분석 시 변수선정

기본 변수	경찰공무원정원, 경찰예산, 총 범죄건수, 인구, GNP
독립 변수	고소·고발접수건수, 유치장수용인원, 불법시위 시범차라건수, 중요범죄발생건수
종속 변수	수사·형사인력

⇒ 다중회귀분석에 따른 향후 수사인력규모 예측 결과

2005 년	17,643 명 (2005. 5. 31 現 17,309명)
2010 년	19,217 명

## &lt;별첨 2&gt;

## ◆ '04년 지방청별 강력범죄 및 지능범죄의 수사요원 1인당 처리건수 비교

구분	강력범죄 발생건수 (건)	강력범죄 수사요원 (명)	1인당 처리건수 (건)	구분	지능범죄 발생건수 (건)	지능범죄 수사요원 (명)	1인당 처리건수 (건)
제주	241	79	3.05	충북	7,512	104	72.23
경기	3,201	1,127	2.84	제주	4,074	57	71.47
충북	443	196	2.26	전남	25,395	375	67.72
인천	886	395	2.24	충남	17,031	252	67.58
충남	1,033	465	2.22	강원	8,559	134	63.87
전남	1,147	541	2.12	전북	10,875	178	61.10
울산	367	182	2.02	경북	13,104	229	57.22
서울	3,935	1,984	1.98	경기	45,930	826	55.61
경북	721	379	1.90	경남	14,311	260	55.04
경남	803	430	1.87	대구	13,993	270	51.83
강원	444	238	1.87	울산	5,433	111	48.95
대구	703	412	1.71	서울	67,371	1,506	44.74
전북	415	278	1.49	부산	20,755	472	43.97
부산	1,126	867	1.30	인천	11,169	271	41.21
계	15,465	7,573	평균 2.04	계	265,512	5,045	평균 52.63

- ◆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04.1.1~2004.12.31 1년간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202 통계)
- ◆ 강력범죄 수사요원은 지방청·경찰서의 순수 강·폭력범죄 수사인력
- ◆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2004.1.1~2004.12.31 1년간 발생한 사기, 횡령, 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상습), 특경법(사기), 준사기, 준사기(상습), 특경법(횡령), 업무상횡령, 점유이탈물횡령, 특경법(배임),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15개 지능범죄(202통계)
- ◆ 지능범죄 수사요원은 지방청·경찰서의 순수 지능·경제범죄 수사인력

<별첨 3>

◆ 국관 기능 중요도 비교 조사설문지

**설문작성방법**  
 - 다음 기준에 의해 보라색 부분에 상대적 중요도를 숫자로 기입  
 예, 생활안전국에서 질서유지법집행보다 매우 중요하면 7, 법집행이 생명과 신체보호보다 약간 중요하면 1/3으로 기입

상대적 크기 (중요도)	정의
1	서로 같음
3	약간 중요함
5	중요함
7	매우 중요함
9	절대적으로 중요함
2, 4, 6, 8	각 사이의 중요도 크기

구분	질서유지	생명과 신체 보호	법집행
질서유지		5	7
생명과 신체 보호			1/3
법집행			

설문내용

- 상기의 설문작성 방법에 따라 아래 보라색 셀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작성자 1인이 모두 기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생활안전국에 있는 작성자는 타 부서의 모든 내용도 기입해야 함)

생활안전			
X \ Y	공공의 질서유지	개인의 권리보호	국민만족도 제고
공공의 질서유지			
개인의 권리보호			
국민만족도 제고			

수사			
X \ Y	공공의 질서유지	개인의 권리보호	국민만족도 제고
공공의 질서유지			
개인의 권리보호			
국민만족도 제고			

경비

Y \ X	공공의 질 서유지	개인의 권 리보호	국민만족도 제고
공공의 질 서유지			
개인의 권 리보호			
국민만족 도 제고			

정보

Y \ X	공공의 질 서유지	개인의 권 리보호	국민만족 도 제고
공공의 질 서유지			
개인의 권 리보호			
국민만족 도 제고			

보안

Y \ X	공공의 질 서유지	개인의 권 리보호	국민만족도 제고
공공의 질 서유지			
개인의 권 리보호			
국민만족 도 제고			

외사

Y \ X	공공의 질 서유지	개인의 권 리보호	국민만족도 제고
공공의 질 서유지			
개인의 권 리보호			
국민만족 도 제고			

교통

Y \ X	공공의 질 서유지	개인의 권 리보호	국민만족도 제고
공공의 질 서유지			
개인의 권 리보호			
국민만족 도 제고			

전체

Y \ X	생활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교통
생활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교통							

## &lt;별첨 4&gt;

## ◆ 수사업무의 환경변화에 따른 적정업무시간 조사설문지

\* 수사업무의 환경변화에 따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적정업무시간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 ① 수사업무에 대한 내용을 읽으신 후 귀하의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단 정확한 시간을 모르시는 경우 경험적인 개략의 시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③ 질문 중 수사업무성격상 또는 지역특성상 소요시간이 다양할 경우, 최근 3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수사업무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부서에 있는 가장 우수한 직원 1인이 첩보수집 및 내사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로 걸리는 시간과 최소로 걸리는 시간을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으로 분리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외근형사	조사요원
최대시간		
최소시간		

- 10분 단위로 기입함, 예를 들어 70분 소요되면 "70"으로만 기입(이하 동일)

2. 귀하의 부서에 있는 가장 우수한 직원 1인이 피해자 조사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로 걸리는 시간과 최소로 걸리는 시간을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으로 분리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외근형사	조사요원
최대시간		
최소시간		

3. 귀하의 부서에 있는 가장 우수한 직원 1인이 피의자 조사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로 걸리는 시간과 최소로 걸리는 시간을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으로 분리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외근형사	조사요원
최대시간		
최소시간		

4. 귀하의 부서에 있는 가장 우수한 직원 1인이 참고인 조사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로 걸리는 시간과 최소로 걸리는 시간을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으로 분리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외근형사	조사요원
최대시간		
최소시간		

5. 귀하의 부서에 있는 가장 우수한 직원 1인이 기타서류작성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로 걸리는 시간과 최소로 걸리는 시간을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으로 분리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외근형사	조사요원
최대시간		
최소시간		

6. 귀하의 부서에 있는 가장 우수한 직원 1인이 대질조사 및 증거수집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로 걸리는 시간과 최소로 걸리는 시간을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으로 분리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외근형사	조사요원
최대시간		
최소시간		

7. 귀하의 부서에 있는 가장 우수한 직원 1인이 사전지휘제도신설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로 걸리는 시간과 최소로 걸리는 시간을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으로 분리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외근형사	조사요원
최대시간		
최소시간		

8. 귀하의 부서에 있는 가장 우수한 직원 1인이 전산입력 및 통신수사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로 걸리는 시간과 최소로 걸리는 시간을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으로 분리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외근형사	조사요원
최대시간		
최소시간		

9. 귀하의 부서에 있는 가장 우수한 직원 1인이 영장집행 등 외근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로 걸리는 시간과 최소로 걸리는 시간을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으로 분리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외근형사	조사요원
최대시간		
최소시간		

10. 귀하가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피해자·피의자·참고인을 몇 명이나 조사하고 있는지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으로 분리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외근형사	조사요원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 0.5명 단위로 기입함, 예를 들어 2.5명 조사하는 것 같으면 "2.5"로만 기입

연구보고서 2006-09

## 경찰 기능조정 및 인력재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

---

2006년 11월 발행

2006년 11월 인쇄

발행인 : 이 병 진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88번지

인쇄처 : (주) 대한 피앤디

(TEL : (02)2268-0458)

---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